

美國에 있어서 會計原則의 生成과 發展

李 正 浩

《目次》	
I. 序 言	
II. 會計原則 生成의 歷史的 背景	
1. 1920年代의 美國經濟	3. 美國會計學會에 의한 會計原則의 展開
2. 1920年代의 會計實務	(1) 1936年의 會計原則과 그 후의 改正
(1) 自由會計의 時代	(2) 『基礎的 會計理論에 관한 報告書』
(2) 固定資產再評價實務	(3) 其他 研究刊行物의 出版
(3) 無額面株式制度	4. 證券去來委員會의 會計原則에 대한 立場
3. 經濟恐慌이 會計에 미친 影響	(1) 證券去來委員會의 發足과 機構
(1) 大恐慌과 證券關係의 諸法	(2) 證券去來委員會와 會計原則
(2) 證券諸法 制定이 전의 青空法	(3) 證券去來委員會가 會計에 미치는 影響
(3) 證券法과 證券去來法의 制定	5. 財務會計基準審議會의 活動과 展望
4. AIA와 NYSE와의 協力關係	(1) 會計原則審議會에서 財務會計基準 審議會로
III. 會計機關에 의한 會計原則의 展開過程	(2) 會計基準의 設定을 위한 組織
1. 初期의 會計基準	(3) FASB 會計基準의 設定過程
2. 美國公認會計士會에 의한 會計原則의 展開	(4) FASB와 SEC의 關係
(1) 特別委員會의 活動과 成果	(5) FASB 體制에 대한 批判
(2) 會計節次委員會의 活動과 成果	(6) FASB의 展望
(3) 會計原則審議會의 活動과 成果	IV. 結 言

I. 序 言

우리나라에서 「企業會計原則」을 처음으로 成文化하여 발표한 것이 1958年の 일이니 會計가 하나의 社會的 制度로서 일반에게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지 4반세기가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 民族 고유의 簿記法인 「四介松都治簿法」이 高麗時代부터 商人們간에 傳來되어 實用化된 바 있었다고 하나 이것은 특정의 產業分野의 諸多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행되었을 뿐 모든 產業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社會的 承認을 받아 일반적으로 수용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또한 韓日合併 이후에 日人們에 의하여 西洋의 複式簿記法이 學校教育을 통해서 一般에게 보급되었고 또 몇몇의 한정된 企業에서 이를 採用

하여 實施하였으나 會計行爲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어떤 基準을 마련하지 않은 채 慣習의인 方법을 그대로 답습하는데 그쳤고 그에 대한 별다른 論議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되었던 문제만은 아니며 1930年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國家는 會計行爲의 基準을 마련하지 못한 채 商慣習에 따라 企業의 經濟活動을 記錄·報告하는 傳統의in 관습을 답습하는데 급급하였다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의 이 같은 현상은 1945年的 8·15解放을 맞고 1950年的 6·25動亂 등 混亂期로 인하여 개선되지 못하고 1950年代 후반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進前을 보지 못한 채 지속되었다. 1950年 후반기에 와서야 우리나라 經濟가 6·25動亂의 막심한 災害를 어느정도 회복하고 安定期에 접어들면서 未備한 企業會計制度를 整備하여 企業의 經濟成果와 財務狀況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换言하면 政府에서는 經濟復興을 지상의 課業으로 삼고 企業의 合理化를 촉진하는 동시에 外資導入, 企業의 健全化, 租稅의 公正化, 證券投資의 民主化, 金融의 適正化 등 당시에 山積된 問題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企業會計制度를 긴급히 확립하고 整備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時代의 要請에 따라 企業의 經濟 및 經營活動을 指導하고 評價할 수 있는 企業會計制度의 구체적 조치로 나타난 것이 1958년의 「企業會計原則」과 「財務諸表規則」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갖는 社會的 意義는 실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國家에서 會計가 社會的으로 受容되어 하나의 社會的 制度로까지 發展되기 위해서는 많은 過程을 거치게 된다. 오늘날 先進諸國家의 會計制度의 成立過程을 보면 特定의 經濟與件을 背景으로 한 會計實務가 우선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오랜 時日을 두고 經濟社會의 與件變化에 따라 調整을 이루어가면서 새로운 知識이 蓄積되어 會計慣習으로 나타나 產業社會 전반에 보급되게 되어 社會的 承認을 받아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서 成立하게 된다. 英國·美國을 중심으로 한 先進資本主義國家에 있어서의 會計制度는 거의 예외 없이 이 같은 歷史的 과정을 거쳐 확립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制度는 先進社會에서 발달하여 형성된 會計制度를 導入하여 우리의 經濟與件에 따라 어느 정도의 修正을 가한 뒤 經濟社會를 指導하는 하나의 社會的 制度로서 확립된 것이다. 1958年に 마련된 「企業會計原則」의 序論에서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原則」은 “企業會計의 實務 속에서 발달된 諸原則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된 바를 要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實務 속에서 발달한 諸原則”이란 어디까지나 先進社會에서 발달한 會計實務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의企業會計實務를 지도하는指針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1958년의「企業會計原則」과「財務諸表規則」은先進諸國 특히, 그 중에서도美國에서 이루어 놓은學問의成果에 많은 영향을 받고成文化되었던 것이다. 즉美國에서의會計原則은1930年代의經濟恐慌을契機로投資者를保護하기 위하여成文化하기 시작하여1938年에는세教授의共同研究結果로『會計原則에관한報告書』(A Statement of Accounting Principles)가發表된바 있는데, 이報告書는1949年日本의企業會計原則을마련하는데 있어서그母體를이루었고우리나라의「企業會計原則」에支配적인영향을미쳤던것이다.

1930年代 이후의美國會計의歷史는會計原則의制定 및改廢의歷史라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學界 및 實務界的 관심은會計原則의 수립 문제에집중되고있다. 이와같이볼때우리는美國의學界 및 實務界에서의會計原則에관한研究 및發展過程을면밀하게分析·檢討함으로써우리의會計實務를올바로評價하고또發展시킬수있는理論的根據를찾을수있지않을까생각한다.

美國의會計原則은직접적으로는1930년대의經濟恐慌이후의investment保護를위한조치로부터비롯되어論議되기시작하였다. 그러면어떤經濟的與件하에서會計原則에관한論議가불가피하게되었고, 또그이후는어떻게展開되어현재에이르고있는가하는점을분석하기로한다.

II. 會計原則生成의歷史的背景

1. 1920年代의美國經濟

1914년에第1次世界大戰이발발하면서美國은다른나라에信用供與를增大시켰으며,貿易收支를대폭적으로개선하는한편, 각종產業의발흥,产业技術의進步,消費者의購買力增大등에힘입어大戰중에는이른바戰爭景氣를누리게되었고戰後에있어서도1921年과1922年的短期에걸친不況을제외하고는1929年末大恐慌에돌입하기전까지美國歷史上유례를찾아볼수없는好況을누리게되었다. 生產이増大하는가하면높은고용율을나타내게되었고賃金과物價는安定되어있었다. 아직도빈곤한사람들이많이있긴하였으나보다많은사람들의生活與件이安定되어가고있었고전보다는富裕해져가고있었다. 정말로美國資本主義는의심없이그생생한면을보여주었던것이다. 1925년부터1929년사이에製造企業은그數에있어서183,900에서206,700으로증대되었으며生産物의價值는608억불에서680억불로增加하였다. 美聯邦準備局의工業生產指數에의하면

1921년 (1923~1925=100)에 67에 불과했던 것이 1928년 7월에는 110으로 상승하였고 1929년 6月에는 126까지 上昇하였다.

1920년대의 번영은 특히 새로운 產業, 예를 들면 自動車產業 및 建設業과 같은 高價의 產業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26년에는 4,301,000臺의 自動車가 生產되었으며 이로부터 3年 뒤인 1929에는 100萬臺 以上이 增加한 5,358,000臺의 自動車를 生산하였는데 이것은 풍요로웠던 1953년에 새로이 登錄된 自動車臺數인 5,000,000臺와 거의 맞먹는 것이었다.⁽¹⁾

이것은 당시 人口 6名當 1臺의 자동차를 保有하는 수였다. 自動車工業의 확대는 다시 鐵鋼, 고무, 坂유리, 石油製品에 대한 需要增大를 유발시켰고 道路網의 改善와 高速道路建設을 위한 建設붐을 야기시켰다. 1926年에 民間建設에 投資한 額數만 보더라도 \$110億에 달하였으며, 1922年부터 1930年까지 \$70億을 下廻한 해가 없었다. 점차로 번영하는 國民들은 個人住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企業은 營業用 建物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政府支出의 일부는 造船工業 및 建設業 등의 民間產業部門에 대한 投資로 사용되었다. 그 결과 新機械와 大量生產의 확대 發展, 技術進步 및 經營의 科學化를 통해서 勞動生産性은 크게 향상되었다. 이와 함께 몇몇 巨大한 大規模 株式會社가 출현하여 美國의 中요한 產業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例로서 1920年代末에 가서는 Ford, Chrysler, General Motors 등 3個 會社가 總自動車生產의 83%를 生產하게 되었고 General Electric 및 Westinghouse는 美國 電氣器具의 상당부분을 生產供給하게 되었다.

戰後의 美國經濟를 번영으로 이끌 또 다른 하나의 要因은 國際貿易에서 찾아 볼 수 있다. 戰爭期間 동안에 美國은 海外에 많은 投資를 하여 종래의 債務國으로부터 債權國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1919年까지 美國의 民間部門에서 갖고 있던 債權이 37億弗에 달하게 되었는데 그것의 일부는 輸入을 超過한 輸出의 擴大에 의한 것이었다. 1928年에 美國의 國際收支面에서의 黑字는 10億弗을 上廻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戰後에 있어서의 美國經濟는 大量生產體制의 擴大, 產業에 있어서 生產能率의 向上, 높은 利潤, 生產水準의 向上 및 높은 水準의 고용 등이 당시의 美國經濟를 代辦하는 용어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의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이같은 好況은 證券市場에 直接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즉, 大戰中에 一般大眾에 發行한 自由擁護國債에의 經驗을 토대로 하여 전후에는 一般大眾이 기업의 資金調達에 株式配當 및 現金配當을 목표로 하여 株式投資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주식투자에의 관심은 零細投資家에게까지 일반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戰後에 있어서 美國經濟의 好況은 產業革命의 결과로

(1) J.K. Galbraith, *The Great Crash 1929*, 1979, p. 2.

서 既存의 產業施設을 가지고 있는 네다가 戰後에도 계속된 政府支出의 결과 그 일부가 聯合國에 대한 借款이나 援助로 사용되어 그것이 다시 美國製品을 購入하는데 사용되어 美國 產業을 자극하였기 때문이다.

1920年代의 美國經濟가 번영을 누렸다고 해서 모든 產業이 好況을 누린 것만은 아니다. 石炭產業, 製靴業, 造船業, 纖維產業, 海運業, 鐵道產業 등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產業에 따라서는 企業이 倒產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產業間의 발전에 不均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20年代의 美國經濟는 急速한 成長을 보인 시기로서 1919年에 國民總生產이 742億弗에 불과하던 것이 1929年에는 1,040億弗까지 增加하였고 같은 期間에 1人當 年間所得도 不變價格으로 710弗에서 \$ 857로서 上昇하여 이를바 「20年代의 번영」 또는 「永遠의 번영」을 누렸던 것이다.

2. 1920年代의 會計實務

(1) 自由會計의 時代

그러면 「永遠의 번영」을 누렸던 20年代의 會計實務는 어떠했는가?

企業이 大規模化하고 生產量이 增大하게 되면 그것이 社會에 미치는 영향을 간파할 수 없게 되어 企業이 私的 組織으로서의 特性보다는 社會的 特性을 강하게 갖게 된다. 그렇게 되면 會計도 또한 企業의 단순한 私的 管理道具에 그치지 않고 社會的 性格을 갖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年代의 美國에 있어서의 會計는 企業의 私的 管理道具로만 사용하는데 그치고 社會的 用具로의 發展을 시키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즉 당시의 業界는 自由放任的인 經濟活動을 향유하는 한편 會計 문제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規制받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리틀頓·짐머만(A.C. Littleton and V.K. Zimmerman)은 이같이 規制를 좋아하지 않은 財務會計의 慣行에 따라 1920年代의 자유로운 또는 放漫한 會計가 축전되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企業은 자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報告하는 財務的 情報를 작성하고, 資產을 再評價하며, 또 다른 會社를 合併하도록 할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은 自由會計는 1920年代와 1930年代에 보급된 상황이 企業에 미친 影響과 더불어 美國會計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 時代의 어떤 行動에 대한 環境을 構成하였다.”⁽²⁾

이와 같이 리틀頓·짐머만은 1920年代의 會計를 自由會計(freedom accounting)의 時代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에서 自由會計란 말이 象徵하고 있듯이 20年代의 會計는 아무런 규제

(2) A.C. Littleton and V.K. Zimmerman, *Accounting Theory: Continuity and Change*, Prentice-Hall Inc., Englewood-Cliffs, N.J., 1962, p. 94.

나 制約을 받지 않고 會計實務를 수행하는 無法의 時代(unregulated era)⁽³⁾였다. 企業에서 是 株式配當과 株式分割, 借換(refinancing), 準更生 등을 하는가 하면 固定資產의 再評價나 無額面株式制度 등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 會計實務가 亂舞하고 流行하던 時期였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會計實務는 財務諸表를 공표하는데 多樣한 方法을 인정하고 있었다. 당시에 수행된 實務중에서 가장 크게 誤用된 會計分野가 있었다면 그것은 固定資產再評價와 無額面株式制度와 관련하여 나타난 剩餘金에 관한 會計實務라고 할 수 있다. 당시 企業에서 자행되었던 會計의 濫用에 관해서 리틀톤·짐머만은 다음과 같이 表現하고 있다. “이 無法의 時代에 固定資產의 분야 만큼이나 企業의 資料를 그럴듯하게 보이게끔 한 會計實務의 濫用은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1920年代의 전반적으로 良好한 經濟狀態는 널리 전파된 樂觀主義를 특히 經營者層으로 하여금 갖도록 하였다. 固定資產의 市場價值가 原價보다 높은 경우에는 實現된 것으로 認識해도 된다고 하는 思考가 固定資產의 評價額을 計定에 記錄하는 會計實務로 발전되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경우의 貸邊差減殘額은 보통의 方法이나 濫用의 方法으로 剩餘金計定에 기입하였던 것이다.

다른 影響은 社會的으로 중요성을 갖는 會計實務에 탄력성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즉 資產再評價剩餘金에 대한 法律上의 配當處分可能性에 관한 여러가지 株式會社法에 있어서의 不一致와 缺陷은 다시 새로운 無額面株式制度를 낳아 그 時代를 株式投機熱過剩의 舞臺로 만들었다. 강력한 樂觀的 確信, 생각한 대로 그리고 獨斷的으로 選擇하기 위해서 利用할 수 있는 多樣한 會計節次, 그리하여 配當과 株式去來에 대해서 명백히 法的으로 讀美된 自由一이들, 요인은 株式會社의 經營者를 무모하고도 悲劇的으로 격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剩餘金의 濫用—이것은 營業利益과 非營業利益 및 評價益의 亂雜한 混合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였다—은 직접 借邊記入이나 貸邊記入을 통해서 期間의 利益額을 獨단적으로 变경시키기 위해서 剩餘金計定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또한 리틀톤·짐머만은 1920년대의 美國會計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1921년의 급격한 價格추세의 逆轉이 있은 후 繁榮의 時期가 도래하였다. 들이켜 보면 그것은 상당한 價格インフレ와 크게 변화하는 心理的反作用의 時期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의 장래에 대한 見解의 변화는 上昇傾向에 있는 株式市場에 의해서, 빈번한 株式配當과 株式分割에 의해서, 그리고 會社의 借換(refinancing) 및 準更生에 의해서 명확하게 證明할 수 있다. 이들 당시의 頭腦的인 方法과 財務行爲는 固定資產에 대한 빈번한 再評價와 그에 따르

(3) *Ibid.*, p. 130.

(4) *Ibid.*, pp. 130-131.

는 一般剩餘金에의 計上 형식으로 財務諸表에 반영되었다.”⁽⁵⁾

1920年代의 會計實務에 대해서는 많은 學者들이 대략 以上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당시의 會計實務를 批判하고 있다.⁽⁶⁾ 이곳에서는 固定資產再評價와 無額面株式制度에 초점을 두고 이들이 당시에 어떻게 濫用되었는가를 보기로 한다.

(2) 固定資產再評價實務

1920年代의 資產評價에 관한 實務는 어떤 일관된 방법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가지의 現行市場價格(current market price)으로 評價하는가 하면 또 때에 따라서는 歷史的 原價(historical cost value)로 評價하여 財務報告를 하였던 것이다. 특히 1920年代 후반에 와서는 固定資產을 評價增시켜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1920年 이후에는 大恐慌을 계기로 하여 評價減시켜 報告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1920年代 후반에 유행했던 固定資產評價增을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두가지 측면에서 會計效果를 누릴 수 있었다. 그 하나는 減價償却費를 擴大計上 함으로써 公表利益을縮小化 할 수 있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再評價剩餘金도 配當可能하다고 하는 당시의 株式會社法을 배경으로 하여 投資者를 매혹하는 剩餘金을 창출해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會計實務에서 높은 利益을 올리고 있는 獨占的大企業에 있어서는 配當을 抑制하고, 減免稅를 받기 위하여 固定資產에 대한 評價增을 公表利益縮小表示하는 手段으로 활용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利益力밖에 갖지 못하는 中小企業에 있어서는 높은 株價를 유지할 目的으로 固定資產에 대한 評價增을 公表interest擴大表示의 效果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경우에 評價增시킨 固定資產을 기초로 한 減價償却의 實務는 獨占的大企業에서는 규칙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나 中小企業의 경우에 있어서는 減價償却을 전연 하지 않던가 아니면 償却을 한다 하더라도 不規則的이고 또 斷續的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920年代의 株式投機熱이 극심했던 시기에 문제로 되었던 것은 주로 中小企業의 固定資產評價增을 매개로 한 公表interest의 팽창을 피했던 會計實務라고 할 수 있다.

(3) 無額面株式制度

1913年に 無額面株式制度가 法的으로 채용되면서 1920年代에 와서는 無額面株式制度가 광범하게 보급되었다. 無額面株式制度下에서 無額面株의 發行價格 중 얼마를 剩餘金計定과 資本金計定에 분할하여 記載할 것인가를決定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理事會의 權限에 속하

(5) *Ibid.*, p. 97.

(6) D.F. Hawkins, *Corporate Financial Reporting*, Richard D. Irwin, Homewood, Ill., 1971, p. 30. N.M. Bedford, *The Future of Accounting in Changing Society*, Stipes Publishing Company, 1970, p. 60.

G.O. May, *Financial Accounting: Distillation of Experience*, 1943, p. 258. 등을 참조.

는 것이었다. 환언하면 理事會는 無額面株式制度를 매개로 하여 公表上의 資本金과 剩餘金의 金額을 自由로이 变경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無額面株式制度를 통해서 企業은 다음과 같은 會計效果를 누릴 수 있었다. 그 하나는 無額面株式의 發行액 중 근소한 금액만을 資本金計定에 편입시키는 한편 剩餘金計定을 飲食시켜, 이 增大된 剩餘金을 가지고 株式配當과 現金配當을合理화하고 또는 営業權을 債却 한다던가 아니면 缺損을 填補하는데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會計實務는 당시의 株式會社法이 剩餘金計定에 貸記된 것은 어느 것이나 處分可能한 利益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⁷⁾ 이같은 論理는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되었다. 즉 無額面株式의 發行價額의 金額을 資本金에 편입시키는 동시에 未分配利益도 無額面資本金에 포함시킬 수 있는 會計實務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株式會社法하에서 處分可能한 剩餘金을 축소표시하고 資本金計定에 편입시켜 配當可能性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無額面株式制度는 당시에 企業의 資本金計定과 剩餘金計定의 境界를 지극히 變化可能하고 탄력적인 것으로 하여 이것이 결과적으로 허위보고의 道具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1920年代의 會計實務는 固定資產의 再評價를 통해서는 公表貸借對照表의 借邊에 기재되는 資產評價額을 자유로이 變화시킬 수 있었고 또 無額面株式制度를 통해서는 公表對借對照表의 貸邊에 기재되는 資本金額을 자유로이 變화시킬 수 있는 지극히 탄력적인 會計가 허용되는 時期였다. 이와 같은 自由會計는 美國의 株式會社가 전통적으로 法律的인 규제를 최소한으로 하여 運營되는 조건하에서 可能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自由會計下에서 獨占의 大企業은 公表上의 利益 및 剩餘金을 축소 計上함으로서 配當抑制 등을合理화하고 非獨占의 中小企業은 株式의 維持, 操作 등을 目的으로 하여 公表上의 利益 및 剩餘金을 확대 計上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3. 經濟恐慌이 會計에 미친 影響

(1) 大恐慌과 證券關係의 諸法

第1次世界大戰을 겪고난 후 1920年代의 美國經濟는 각종 산업분야에서 두드러진 擴張·發展을 이루하였으며 그에 따라 證券市場은 好況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證券市場이 好況을 맞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理由를 들 수 있다. ⁽⁸⁾ 첫째는 당시에 대부분의 會社利益이 계속해서 增大해 왔다고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1916년부터 1925년

(7) A.D. Chatfield, *Contemporary Studies in the Evolution of Accounting Thought*, Dickenson Publishing Company, Belmont California, 1968, p. 243.

(8) Robert L. Heilbroner, *The Economic Transformation of America*,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77, pp. 169-170.

까지의 10년간에 大規模 製造企業의 年平均 總利益은 7億 3千萬弗에 달했으며 1926년부터 1929년까지의 年平均 總利益은 14億弗로 크게 增加하였다. 1929년에 있어서의 利益은 1920년의 이익과 비교해 볼 때 3倍에 달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20년부터 1929년 사이에 配當金支給額이 3倍로 增加하여 株式을 購入한다는 것은 많은 配當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證券市場이 好況을 보게된 두번째 理由로서는 銀行 및 證券브로커들이 株式의 潛在購買者들에게 막대한 資金을 貸與하여 株式을 購買하도록 자극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株式購入을 위하여 貸與金으로支出된 資金이 1920년에 10億弗에 불과했던 것이 1928년에는 무려 60億弗로 6倍나 증가하였다. 株式投資者가 현금 500弗을 投資하고 銀行 또는 株式브로커들로부터 나머지를 貸與받아 1000Fr의 株式을 購買함으로서 巨富가 될 수 있다고 한 경우에 이를 마다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이같은 狀況下에서 150萬名에 달하는 史上類例를 찾아 볼 수 없는 株式投資家들이 뉴욕株式去來所에서 1923년에 2億 3,600萬株의 株式을 去來하였으나 1928년에 와서는 11億에 달하는 株式을 賣渡하였다.

당시 株式市場이 好況을 이룬 세번째 理由는 당시에 누구라도 간단하게 巨富가 될 수 있는 그럴듯한 方法이 一般大衆을 현혹시켰다고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당시에 많은 美國民들은 社會的 指導層에 속하는 人物들의 勸告에 힘입어 株式市場의 好況에 더욱 加勢하였다. 예를 들면 당시 GM社의 디렉터이고 民主黨의 議長인 라스코보(John J. Rascob)는 1928년에 Ladies Home Journal에 “누구나 富者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글을 發表한 바 있는데 이곳에서 中產層을 對象으로 하여 한사람이 1週日에 15Fr씩을 賯蓄하여 普通株式에 投資한다고 할 때 20年 뒤에는 적어도 80,000Fr이 되고 이로부터 每月 約 400Fr의 投資利益을 얻어 富者가 될 수 있는具體的인 方法을 제시하여 미숙한 投者者들을 현혹시키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株式市場의 봄은 새로운 投資對象을 찾아 헤매던 미숙한 投資家들의 관심의 對象이 되어 新生企業에까지 競爭의으로 投資하는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株價는 확실한 근거도 없이 떠도는 그릇된 情報와豫測을 기초로 하여 高騰하고 好景氣는 계속되었다. 好景氣는 株式投機에만 그친 것은 아니었다. 浪費의 支出과 不動產投機가 合勢하여 物價는 天井不知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一般大衆은 投機勢에 끌려 信用去來에 의한 投機의 株式賣買에 소일하고 있었다.

한편 美聯邦準備銀行은 이와 같은 投機目的에 銀行 信用貸出이 가져올 惡影響을 우려한 나머지 1927년 2月 7일에는 投機的 去來에 信用貸與를 制限할 것을 공표하고 證券業者の 貸與金을 6億Fr 내지 7億Fr로 制限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 같은 상황이 進行된 好景氣 속에서 이룬 富의 蕪積이 허망한 꿈이 될 것이라는 것을豫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 것이 1929년 10월 24일 사전에 아무런豫告도 없이株價가 暴落하는 “暗黒의 木曜日”을 맞이하였다. 그 이튿날 뉴욕 타임즈에는 “하룻만에 12,894,650株가 높에 빠지다”라는 머릿記事와 함께 당일의 市場狀況을 記錄하고 있었다. 즉 24일에 나타난 일은 前日의 株價보다 훨씬 밀도는 價格으로 株式을 購買하려는 것이었다. 人氣種目인 Montgomery Ward株는 83弗에 내놓았으나 50弗에 去來되었고 Goldman Sachs Trading Corporation株는 81弗에 내놓았으나 65弗까지 下落하였다. General Electric 社의 株式은 315弗에서 283弗로 下落하였다. 株式에 따라서는 어떤 값에도 賣買가 되지 않은 것도 있었다. 이 같은 異變에 대하여 당황한 銀行界에서는 集會를 갖고 “市場狀況은 아직健全하다”고 하는 聲明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10月 29일에 가서는 史上 未曾有의 16,410,030株가 붕괴되었다. 이날 입은 損失은 여러가지 종류의 證券이 去來된 관계로 推定하기 곤란하나 뉴욕 株式去來所에서는 880個의 發行會社가 約 80億弗에서 90億弗의 損失을 보았다고 발표하였다.

株式市場의 붕괴에 의한 損失은 이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였다. 1929년 9월 1일 뉴욕 株式去來所에 上場되어 있던 株式的 價額은 89,668,276,854弗이었다. 이것이 1932년 7월 1일에는 15,633,479,577弗로 下落하였다. 따라서 이 期間동안에 株主들은 74,000,000,000弗의 損失을 입었다. 이 金額은 엄청난 것으로서 당시 美國人 1人當 616弗, 그리고 第1次大戰에 支出한 戰費의 3倍가 되는 것이었다. 여기에다 社債에서 입은 損失까지 합치면 損失總額은 930億弗이 넘는 것으로 推定되었다.

1930年末까지 600萬名 이상의 勞動者들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를 헤매었으며 이 數字는 1933년에 가서는 全體勞動者 5,160萬名중 4분의 1인 24.9%에 달하는 1,280萬名의 失業者를 내었다.⁽⁹⁾ 農場 勞動者들도 거의 4분의 1이 農場을 잃고 말았다. 全國的으로 住宅建設은 그 以上 추진되지 않았고 9,000의 銀行이 심각한 恐慌의 5年동안에 倒產하는가 하면 85,000개의 企業이 문을 닫고 말았다. 恐慌期에 살아남은 企業도 1920년대에 비하여 거의半도 안되는 操業度로서 겨우 命脈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절망의 나날을 보냈다. 펜실바니아 製材所에서의 時間當 貨金은 5센트에 불과 했고 오하이오州에서의 事務職 종업원의 給料도 1/3내지 반으로 삭감되었다. 1929년에 최고 256弗까지 上昇하였던 New York Central Railroad의 株價는 1932년에 가서는 株當 8.75弗까지 下落하였고 Radio Corporation of

(9)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1960, p. 70.

America의 株式도 1929년에 최고 \$ 570弗이었던 것이 1932년에 와서는 株當 2.50弗까지
暴落하는 悲運을 맞이하게 되었다. 1933년 下院에 제출된 調査報告書에 의하면 1920년부터
1933년까지 美國內에서 발행한 證券總額은 500億弗에 달하였으나 그의 절반이 전연 無價値
한 것이 되고 말았다.⁽¹⁰⁾

이와 같은 經濟興件下에서 一般大衆이 받는 經濟的 打擊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
운 것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被害者가 社會各層에서 多數 나타났을 뿐 아니라 이것은 또한
美國經濟를 이끌어 온 指導理念인 自由放任主義(laissez faire) 經濟體制에 대한 도전으로 보
지 않을 수 없었다. 이같은 問題를 해결하려는 努力의 一環으로 나타난 것이 1933년부터
制定되고 또 改正過程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된 다음과 같은 여러 法律이다.

- ① 1933年의 證券法(Securities Act of 1933)
- ② 1934年의 證券去來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 ③ 1935年의 公益事業持株會社法(Public Utility Holding Company Act of 1935)
- ④ 1939年의 投資信託證書法(Trust Indenture Act of 1939)
- ⑤ 1940年의 投資會社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 ⑥ 1940年의 投資顧問法(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 ⑦ 1970年의 投資者保護法(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 ⑧ 破產法 第10章(Chapter X of Bankruptcy Act)
- ⑨ 1977年의 海外不正行爲法(Foreign Corrupt Practice Act of 1977)

다음에 설명하게 될 證券去來委員會(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위에
열거한 諸法律을 監督·管理하고 이를 法에서 目的하는 바를 유효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었다.

(2) 證券諸法 制定 이전의 青空法

이상과 같은 證券과 관련된 諸法이 制定되기 이전에 美國에 있어서 證券去來에 관한 法
律上의 規制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933年 證券法에 의한 證券規制가 있기 전에는 소
위 青空法(Blue Sky Law)이라는 州法이 있어 이에 따라 어느 정도의 證券規制가 이루어
졌던 것이다.

青空法은 1911年 캔자스州에서 처음으로 制定되어 그 후 급속하게 각州에 파급되어 1921
年에는 38州가 제정하였고 1933年에는 네바다州를 제외한 모든 州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10) K. Fred Skousen, *An Introduction to the SEC*, 2nd ed., South-Western Publishing Co.,
1980, p. 5.

青空法을 채용하고 있었던 것이다.⁽¹¹⁾ 이것은 證券, 投資銀行家, 證券의 販賣者에게 적용되는 反詐欺의 法律로서 이 法이 적용되는 範圍와 方法은 州에 따라 일정치는 않았다. 그러나 이 法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점은 詐欺를 意圖하고 있는 사람(fraudulent promoter)으로부터 證券의 購入者를 保護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 마찬가지였다.⁽¹²⁾

青空法의 內容으로는 最初로 制定된 캔스اس州法이 가장 嚴格한 것으로서 詐欺를 意圖하고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貧弱한 事業計劃에 賢明치 않은 投資를 하는 市民을 保護할 것도 目的으로 하고 있었다. 이 法律은 모든 證券發行者로 하여금 여러가지 資料와 더불어 財務狀態에 관한 計算書(an account of its financial condition)를 Bank Commissioner에 提出할 것을 要求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會社의 財務狀態에 대한 不正表示는 罰金이나 投獄에 의하여 處罰된다”⁽¹³⁾고 하는 嚴格한 規定을 갖고 있었다. 또한 스튜아트(A. Stewart)에 의하면 많은 州의 青空法은 證券發行會社의 財務諸表에 대해서 獨立會計士에 의한 監查를 요구하였다고도 한다.⁽¹⁴⁾

青空法의 州關係 規定은 그의 嚴格性에 있어서 州마다 큰 差異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 內容에 있어서도 統一되지 못한 점이 많아 여러 州에 걸쳐 證券에 대한 賣出節次를 밟는 경우에 逃避處가 되어 投資家를 충분히 保護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하여 聯邦法規에 따라 證券去來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찍부터 試圖된 바 있으나 1929年の 株式恐慌이 있기 전까지는 충분한 支持를 받지 못하여 法律로서 制定을 보지는 못하였다.

(3) 證券法과 證券去來法의 制定

그러던 것이 1932년에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가 第32代 大統領으로 당선된 후 美聯邦議會의 上院 銀行通貨委員會에서는 證券去來行政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2가지 방안을 내놓고 審議하게 되었다. 이때 상정된 第一案은 株式을 上場함에 있어서 聯邦政府가 發行會社의 내용을 審查하여 上場할 수 있는 會社와 上場할 수 없는 會社를 판단하도록 하는 權限을 賦與하는 方案이었다. 이것은 投資家에게 不當한 損害를 줄 危險性이 있는 株式을 證券市場으로부터 排除하려는 의도에서 제안된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聯邦政府가 株式의 上場適否를 判斷하여 결정할 것을 피하고 株式에 대한 投資上의 判斷은 各 投資家에게 일임하는 한편 政府로서는 上場會社가 投資家에게 情報의 公開, 특히 會計內容을 公表(disclosure)

(11) David F. Hawkins, *Corporate Financial Disclosure, 1900~1933: A Study of Management Inertia within a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Doctoral thesis, Harvard University, 1962, p. 140.

(12) *Ibid.*, p. 139.

(13) *Ibid.*, p. 145.

(14) Andrew Stewart, “Accounting and Regulatory Bodies in the United States,” *the AIA Fiftieth Anniversary Celebration 1937*, The Ronald Press, 1938, p. 156.

하도록 하자는 방안이었다. 論議의 결과 첫번째 案은 憲法에 違背된다는 違憲論과 聯邦政府의 개입을 驚戒하는 의견이 있어 論議의 초점은 第2案에 集中되어 이 法案이 1933年 3月 29日 루즈벨트 大統領의 立法要請의 書翰과 더불어 上下兩院에 提出되었다. 委員會에 의한 公聽, 審議, 修正調整을 거친 뒤에 同年 5月 27日에 大統領의 署名에 의하여 同法의 成立을 보게 되었다. 이와같이 하여 제정된 것이 1933年的 證券法(Securities Act of 1933)이다.

大恐慌 후의 뉴딜政策의 一環으로서 證券法이 聯邦法으로 制定된 憲法上의 根據는 合衆國에 委讓된 權限事項인 州際商業 및 郵便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 根據를 둔 것이다. 즉 證券의 發行과 交付는 州際商業이나 郵便의 手段을 利用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聯邦法으로서의 證券法에 따라 規制對象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聯邦法으로서의 證券法은 1887年에 制定된 州際商業法(Interstate Commerce Act)의 흐름과 같은 性格을 갖고 있다.

證券法에 의한 規制方法은 公開主義를 採擇하고 있는 것이 그 特徵으로 되어있다. 證券法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떤 會社의 證券이 發行될 수 있는가 하는 基準이나 發行證券의 價值를 決定하는 基準을 제시함으로써 證券의 發行을 직접 規制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證券發行時에 그것이 어떤 證券인가 하는 것을 判斷하는데 충분한 情報를 정확하게 投資家에게 公開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判斷은 投資者 자신이 할 수 있도록 하는 公開主義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1933年的 證券法의 骨子를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 特殊한 證券에 관한 少數의例外를 除外하고는 證券의 發行會社는 證券去來委員會에 登錄申告書(registration statement)를 提出함과 아울리 證券의 購入者에게 事業說明書(prospectus)의 交付를 義務化하였다. 그렇지 않고서는 새로운 證券을 각 州에 걸친 去來方法(interstate commerce) 또는 郵便으로 賣出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② 단일 登錄申告書가 중요한 事實에 대해서 그릇된 記述을 하였다던가 또는 이것을 省略한 경우에 그 證券을 取得한 사람은 發行會社, 그의 任員, 理事 또는 引受會社를 告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聯邦去來委員會(Federal Trade Commission)⁽¹⁵⁾는 登錄申告書가 적절하지 못한다고 認定될 경우에 登錄申告書效力停止命令(stop order)을 발하여 申告效力의 발생과 그 證券의 發行을 防止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33年的 證券法이 통과된 후 얼마되지 않아 美議會는 證券을 發行한 후에 證券去來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어떤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法案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와 아울

(15) 1933年的 證券法에 의한 聯邦去來委員會의 權限은 1934년에 證券去來委員會(SEC)로 移管되었다.

이 證券關係法의 機能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機構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나타나게 된 것이 1934년의 證券去來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과 證券去來委員會(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證券法과 證券去來法의 특징적인 차이점은 1933年의 證券法이 證券發行時의 公開制度를 規定한 것이라면 1934年的 證券去來法은 登錄 후의 流通證券을 대상으로 하여 投資家에 대한 계속적인 情報公開를 規定하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證券去來法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① 新規 및 既發行 證券의 去來를 대상으로 하며 發行者가 그 去來所와 證券去來委員會에 신고하지 않고서는 上場할 수 없다.
- ② 모든 證券去來所는 약간의例外를 제외하고서는 證券去來委員會에 登錄하고 그의 監督을 받아야 한다.
- ③ 去來所에서의 去來方法에 대해서도 證券去來委員會가 監督規制의 權限을 갖는다.
- ④ 發行者에 의한 申告에 대해서는 年次報告(annual report) 및 그밖의 것을 證券去來委員會와 去來所에 申告하여 최근의 情報를 포착할 것.
- ⑤ 店頭去來業者에게도 證券去來委員會에의 登錄을 요구하고 이를 監督할 것.
- ⑥ 證券去來金融에 대해서는 聯邦準備銀行이 matching rule을 마련하여 證券去來委員會가 그것을 指示하고 監督할 것.

위와 같은 1934年的 證券去來法에 따라 證券去來行政은 종래의 聯邦去來審議會(Federal Trade Commission)로 부터 證券去來委員會에 移管하게 되었다.

4. AIA와 NYSE와의 協力關係

1933年的 證券法을 基本으로하여 證券去來에 관한 諸法이 제정되고 이것이 집행되기 시작하면서 부터는 會計內容의 公開問題, 財務諸表 作成의 統一性 및 監查問題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같은 當面問題를 해결하는 데는 고도의 專門技術을 필요로 하였고 따라서 聯邦議會의 委員會에서는 專門家의 證言에 따라 立法方針을 檢討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같은 審議過程에서 專門的 의견을 代表한 機關으로서 公認會計士들의 全國的 組織인 美國會計士協會(American Institute of Accountants; AIA, 이것은 1957年에 현재의 명칭인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ICPA로 改稱됨)였다.

이같은 문제에 대한 美國會計士協會의 활동은 聯邦議會에 대해서 보다는 직접적으로는 뉴욕株式去來所(New York Stock Exchange) 및 그밖의 證券去來所와의 協力關係에서 나타났다. 당시에 이같은 활동에 중심이 된 것은 메이(G.O. May)를 委員長으로 하고 보우만(A.

Bowman), 카터(A.H. Carter), 카우치만(C.B. Chouchman), 라이데스돌프(S.D. Leidesdorf) 및 라이브란드(W.M. Lybrand) 등을 委員으로 한 株式去來所協力特別委員會(Special Committee on Cooperation with Stock Exchange)이었다.

이 委員會의 活動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뉴욕 株式去來所 株式上場委員會(Committee on Stock List of the New York Stock Exchange)와의 往復文書를 통한 것이다. ⁽¹⁶⁾ 그중에서도 특히 重要視해야 할 것은 1932年 9月 22日付의 書簡이다. 즉 美國會計士協會(AIA)의 株式去來所協力特別委員會가 뉴욕 株式去來所 上場委員會 앞으로 보낸 書信에는 다음과 같은 勸告案이 포함되어 있다. ⁽¹⁷⁾

① 貸借對照表는 資產과 負債의 現在價值를 표시한 것이 아니란 점을 一般大衆에게 충분히 認識시킬 것.

② 貸借對照表의 歷史的 성격을 강조하고 資產評價에 관한 基準을 명시할 것.

③ 企業의 價值는 利益力에 左右되며 따라서 損益計定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점을 강조할 것.

④ 少數의 포괄적인 會計原則을 普遍的으로 採擇하고, 그 原則의 範圍內에서는 어떤 會計方法을 選擇適用한다 하더라도 制限해서는 안된다.

이와 아울러 同委員會는 뉴욕 株式去來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廣範한(broad) 會計原則을 權告하였던 것이다. 이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① 未實現利益은 簡単적이든 간접적이든 利益計定에 貸記하여서는 안된다. 利益은 特定의 狀況을 제외하고는 企業의 日常的인 營業過程에서 販賣가 이루어진 때 實現되는 것으로 간주한다(實現主義原則).

② 會社가 更生 또는 準更生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資本剩餘金은 當年度 또는 장래 年度의 損益計定에서 費用을 相殺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資本剩餘金에 관한 原則).

③ 從屬會社가 合併 전에 創出한 利益剩餘金은 親會社 및 從屬會社의 聯結利益剩餘金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剩餘金에 대해서 配當을 宣言한 여하한 부분도 親會社의 利益計定에 적당히 貸記할 수 없다(聯結財務諸表에 있어서의 利益剩餘金表示에 관한 原則).

④ 自己株式에 대한 配當金은 利益計定에 貸記되어서는 안 된다(自己株式에 관한 原則).

⑤ 任員, 從業員 또는 從屬會社에 대한 受取計定 또는 받을어음은 별도로 表示하여야

(16) 이들 書簡은 *Audits of Corporate Accounts*, 1932~1934, AIA, 1934年에 收錄되어 있다.

(17) AIA, *Audits of Corporate Accounts*, pp. 12-13 및 George O. May, *Financial Accounting*, Macmillan Co., 1943, pp. 79-82.

한다(明瞭性의 原則).

이와 아울러 美國會計士協會(AIA) 特別委員會는 監查報告書의 標準的인 形式에 관해서도 최초로 勸告하였던 것이다.

이상의 會計 5原則에 離出資本 및 資產評價에 관한 여섯번째의 會計原則이 1934年에 同會의 멤버 및 會計原則 研究特別委員會에 의해서 채택되었다. 이 여섯번째의 會計原則은 1939年 9月에 公刊된 『會計研究公報』(*Accounting Research Bulletin*) 第 1號와 同 第43號 第 1章에 收錄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나타난 會計 6原則(보통 會計 5原則이라 稱함)은 投資者保護를 위하여 이루어져야 할 會計를 6개의 原則으로 요약한 것이며, 이는 成文化된 美國會計原則의 嘴矢로서 그 의의는 실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메이(G.O. May)에 의해서 대표되던 당시의 美國會計士協會의 幹部들은, 上場會社에 대한 財務諸表의 監查를 强制한다는一般的 方針에는 贊意를 表明하고, 業界로 하여금 이에 協力하도록 體制를 整備하는 한편, 財務諸表 作成의 統一을 避하고, 專門職業人인 公認會計士로 하여금 現實的인 指導를 하도록 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하는 主張을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이라는 말로서 財務諸表 作成上의 會計方法에 어느 정도의 統一性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 原則의 内容은 极히 광범위하고 大체적인 것만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會計士의 判断에 맡기는 것으로 하였다.

III. 會計機關에 의한 會計原則의 展開過程

美國의 會計原則 展開過程을 더듬어 보면 1930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會計節次의 健全性을 판단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會計原則에 관한 권위있는 報告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財務諸表의 正當性을 判断할 아무런 基準이 존재하지 않는 與件하에서 監查人은 財務諸表에 대한 證明을 요청받는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財務報告의 過多 혹은 濫用現象이 일반화되었다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1929年 後半으로부터 시작한 經濟恐慌을 經驗하면서 美國에서는 企業을 個人的私有物로 인식하던 종래의 株式會社觀에 대한 反省이 나타나면서 社會的 制度로서의 株式會社를 認識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株式의 社會的 分散에 의하여 所有가 分散되고 社會의 富가 分

散되며 所得分配의 公平이 實現됨과 동시에 資本家에 의한 生產手段의 所有·管理가 아니라 株式分散의 결과 經營者가 생산을 管理支配하는 社會制度에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中小의 資本家뿐만 아니라 勤勞者와 農民 그리고 一般大衆을 企業에 參여시킬 수 있었다. 즉 所有의 分散→株式의 分散→所得의 公平한 分配를 通해서 勤勞者와 農民 그리고 一般大衆을 企業 및 現體制에 參여시킴으로써 歸屬意識을 形성시킬 수 있었다. 이같은 株式의 分散에 의한 株式(證券) 民主主義는 기업의 公開主義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것이 法的制度로서 具體化된 것이 1933년의 證券法과 1934년의 證券去來法이다.⁽¹⁸⁾

이들 聯邦證券法을 運營하기 위한 機關으로서 나타난 證券去來委員會(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證券諸法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會計에 관해서 보면, 證券去來委員會에 제출하는 財務諸表의 樣式과 이의 作成節次·會計節次(會計基準)를 결정하고 上場會社로 하여금 이 會計基準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證券去來委員會는 獨자적으로 會計基準(또는 原則)을 작성공표하는 것은 原則的으로 수행하지 않고 『會計連續通牒』(Accounting Series Release, ASR) 第4號(1938年)에서 證券去來委員會에 제출하는 財務諸表는 “實質的으로 權威있는 支持”(substantial authoritative support)를 받는 會計原則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會計原則의 제정을 職業會計士團體인 美國會計士協會에 委任하였다. 美國會計士會協는 “實質的으로 權威있는 支持”를 받는 會計原則의 수립이란 임무를 부여받아 『會計究研公報』(Accounting Research Bulletin, ARB)와 會計原則審議會 『意見書』(Accounting Principles Board Opinions, APB Opinions)를 냈고, 오늘날에 와서는 財務會計基準審議會(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FASB)에서 『財務會計基準報告書』(Statements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를 公表하고 있다.

이와같이 볼때, 會計原則이 형성된 것은 證券諸法의 制定과 證券去來委員會의 設置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會計報告를 規制하기 위하여 잘 定義된 基準은 없었다.⁽¹⁹⁾ 그러므로 1930年 이전의 會計는 企業의 自由로운 意思에 따라 이루어진 會計라고 할 수 있으며 1930年代 이후의 會計는 權威있는 基準에 따라 會計業務가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 初期의 會計基準—統一會計原則試案

美國의 경우, 第1次世界大戰中에 累進所得稅가 출현하게 되면서 外部監查人을 採用하는

(18) P.F. Brundage, "Milestones on the Path of Accounting," *Harvard Business Review*, July, 1951, p. 76.

(19) John L. Carey, *The Rise of the Accounting Profession*, Vol. 1, AICPA, 1969, p. 144.

企業이 점차로 增大되었을 뿐 아니라⁽²⁰⁾ 企業이 報告하는 利益의 公正性에 관해서도 政府가 관심을 表示하게 되었다. 따라서 1917年에는 信用目的을 위해서 銀行에 제출하는 財務諸表의 作成表示法에 관한 標準化를 기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聯邦準備局(Federal Reserve Board)과 聯邦通商委員會(Federal Trade Commission)은 美國公共會計士會(American Association of Public Accounts, AAPA)에 대해서 標準的인 會計節次에 관한 覺書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覺書는 美國會計士協會(AIA)의 理事會 및 聯邦通商委員會에 의해서 承認된 후, 聯邦準備局에 이를 檢討하기 위해서 提出되었다. 聯邦準備局은 이를 當정적으로 承認하고 全國의 銀行家나 銀行協會에 대해서 이를 檢討하고 批判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1917年 4月에 『聯邦準備局公報』(Federal Reserve Bulletin)에 統一會計(Uniform Accounting)란 이름으로 公刊되었다. 이것은 1918年에 사실상 改正됨이 없이 『公認된 貸借對照表의 作成法』(Approved Methods for Presentation of Balance Sheet Statements)⁽²¹⁾란 標題로서 再刊行되었다. 1929年에는 이것이 다시 『財務諸表의 檢查』(Verification of Financial Statements)란 이름으로 改正되어 聯邦準備局으로부터 公刊되었고 이는 다시 1936年에 가서 美國會計士協會(AIA)에서 『獨立公共會計士에 의한 財務諸表의 檢查』(Examin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by Independent Public Accountants)⁽²²⁾란 이름으로 公刊되었다. 1929年의 公報와 1936年의 公報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아주 興味있는 會計基準의 變화를 찾아 볼 수 있다.⁽²³⁾

1929年版의 『財務諸表의 檢查』는 1920年代의 會計思考를 가장 잘反映하고 있다. 여기서는 會計報告의 目的을 信用目的에 두고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監查 및 貸借對照表制定과 관련하여, 流動資產과 流動負債의 표시에 관한 指示가 2大部分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점 ② 在庫資產은 原價基準 또는 低價基準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것 ③ 監查 및 固定資產의 표시에 관해서는 중점을 期中의 變動과 分類에 두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損益計算과 관련하여 볼 때 1929年版 公報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示唆하고 있다.

① 減價償却費는 利子와 稅金과 더불어 利益으로부터 控除項目으로 하였다는 점 ② 當期純利益(net income for the period)과 當期의 利益 및 損失(profit and loss for the period)

(20) M.E. Peloubet,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Accounting," in Morton Backer, ed., *The Handbook of Modern Account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55), p. 19.

(21) AIA, *Examin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by Independent Public Accountants* (New York, Jan., 1936).

(22) Eldon S. Hendriksen, *Accounting Theory*, 4th ed., 1982, pp. 31-32.

과를 구별하고 있다. 期間利益 및 損失은 期間純利益에 特別의 貸記項目을 加算하고 또 特別의 借記項目을 控除한 結果이다. ③ 前期損益의 修正은 剩餘金에 대한 加減으로 處理된다. ④ 損益 및 利益剩餘金結合計算書의 形式이 제시되었다.

1936年의 改正版은 1929年의 改正版과는 달리 信用目的의 뿐만이 아니라 株主에 대한 年次報告(annual reports to stockholders)를 위해서 작성되는 財務諸表에 대해서 獨立公共會計士가 檢查할 때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意圖된 것이다. 1929年版이 公刊된 이후 1936年版이 나오기까지에 나타난 會計思考의 변화가 있었던 점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會計報告書의 진반적 目的에 변화가 있었다. 즉, 財務諸表는 經營者에 의한 經營過程의 期間的 觀察 및 報告를 提示하기 위해서 作成되어 企業에 있어서 投資의 狀態 및 當該期間中에 수행된 成果를 명백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② 原價基準을 強調하는 同時に 繼續企業概念이 明白히 설명되어 있다.

“중요한 會計慣習의 하나는, 繼續企業의 貸借對照表는 企業의 營業活動이 永續된다는 假定하에서 작성된다. 工場資產, 長期投資 및 無形資產은 보통 現在實現可能價值 또는 再調達價值와는 관계없이 原價 내지는 다른 歷史的 基準에 따라 표시된다.”⁽²³⁾

③ 原價基準을 점차로 강하게 支持하게 되나 1936年版의 編者들은 會計節次의 繼續의 適用의 필요성을 한층 認識하게 되었다.

④ 投資者에게 보다 완전한 會計情報률 제공할 필요성과 利益報告에 대한 改善 및 利益力認識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이 公報에서는 利益概念이 설명되어 있다. “投資者的 觀點에서 볼 때 利益概念은 极히 중요하며, 利益計定은 적어도 貸借對照表와 같은 정도의 重要性을 갖는 것이 오늘날 一般的으로 認定되어 있다.”⁽²⁴⁾고 보고 있다.

⑤ 損益計算書를 重視하는 입장이 貸借對照表에도 反映되어 있다.

⑥ 1936年版에 提示된 損益計算書는 1929年版에서 推奨된 것보다 簡單하다. 營業外損益 또는 臨時的 損益은 其他利益(other income) 또는 其他費用(other charges)이란 項目內에 포함시키고 있다. 當期純利益(net income for the period)이란 項目은 刪除되어 最下段의 數值은 剩餘金에 대체되는 當期純利益 또는 純損失(net profit or loss for period carried to surplus)로 되어 있다.

1936年版 公報에 나타난 다른 하나의 중요한 特징은 貸借對照表監查에 관한 事項이 모두 刪除되고 그대신 財務諸表의 檢查(examination of financial statements)라는 말이 사용되었

(23) AIA, *op. cit.*, p. 2.

(24) *Ibid.*, p. 4.

다는 점이다. 貸借對照表監查란 말은 1910年項에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1917年까지 널리 一般에게 보급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大規模會社가 生成・發展하고 原價計算方法의 급속한 進步와 所得稅法 등으로 말미암아 利益 및 損失에 대한 중요성을 強調하는 傾向으로 나아가 종래의 貸借對照表로부터 損益計算書에로의 중점이 移動하게 되었다.

2. 美國公認會計士會에 의한 會計原則의 展開

오늘날 美國에서 會計原則에 관한 가장 권위있는 見解를 표명하고 있는 機關으로서 美國公認會計士會(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ICPA)를 들 수 있다. 本會는 처음에는 美國公共會計士會(American Association of Public Accountants, AAPA)란 이름으로 職業人으로서의 公認會計士의 규합, 會員들의 권익옹호, 會員資格基準의 설정, 會計技術의 증진, 會計教育의 개선 등 여러 目的을 가지고 1886年에 設立되었다. 그리고 이는 1916年에 再組織되어 1917年에는 美國會計士協會(American Institute of Accountants, AIA)로 改稱되었다가, 다시 1957年에는 美國公認會計士會(AICPA)로 改稱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美國公認會計士會는 오늘날 資格있는 公認會計士들의 全國的인 組織으로서 過去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會計實務 및 理論의 發展에 많은 貢獻을 한 團體로 알려져 있다. 특히, 美國에서 사용하고 있는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은 美國公認會計士會의 公式的인 見解表明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특히, 1930年 이후에 있어서는 AICPA의 特別委員會의 諸報告書, 會計節次委員會(Committee on Accounting Procedure)의 『會計研究公報』(Accounting Research Bulletins, ARS), 會計用語委員會(Committee on Terminology)의 『會計用語公報』(Accounting Terminology Bulletins), 會計究研部(Accounting Research Division)의 『會計研究調查』(Accounting Research Study, ARS), 및 會計原則審議會(Accounting Principles Board, APB)의 『意見書』(Opinions)와 『報告書』(Statements) 등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아 會計原則을 표명해 왔다.

그동안의 美國公認會計士會의 究研努力과 成果를 歷史的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特別委員會의 活動과 成果

AIA에 會計節次委員會가 設置된 것은 1938年的 일이다. 이 機構가 設置되기 이전에 會計基準의 發展에 큰 貢獻을 한 것으로서 AIA의 각종 特別委員會⁽²⁵⁾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이들 特別委員會에서는 利益剩餘金(earned surplus)의 概念과 會計用語에 관하

(25) 당시의 各種 特別委員會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 ① Special Committee on Accounting Terminology.
- ② Special Committee on Procedure.
- ③ Special Committee on the Development of Accounting Principles.

여, 그리고 貸借對照表上의 資產評價 및 外換處理에 관한 會計原則 등에 관하여 究研報告書를 제출한 바 있었다.

또한 上述한 바 있는 美國公共會計士會(AAPA)는 債權者保護라는 大前提 하에서 貸借對照表에 表示하는 資產 및 負債은 換金性이 높은 것부터 表示할 것을 勸告하는 案을 1894年에 決議하여 이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同會는 第2段階 조치로서 1910年에는 會計用語의 統一을 기하기 위하여 會計用語의 定義를 公式化하기 위한 委員會를 設置한 바도 있다.

1930年代 초에 뉴욕株式去來所(New York Stock Exchange)는 컨트롤러協會(The Controllers Instiute, 現在의 Finanical Executives Institute)와 AIA의 도움을 받아 上場企業의 報告問題를 改善하려고 試圖하였다. 그 결과 AIA는 허시(J.M.B. Hoxey)와 메이(George O. May)의 주장에 따라, 會計士·投資家·證券去來所 공통의 利害問題에 대해서 뉴욕去來所와 協同作業을 위한 特別委員會를 設置하고, 메이(G.O. May)를 그 委員長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AIA의 同委員會에서 去來所에 보낸 書翰에서 몇 가지 점을 勸告하였는데 그것은 會計處理方法의 選擇에 있어서 會計監查人이 어떤 制限된 範圍內에서 기업에 選擇權을 賦與하고 그리고 나서 監查人은 그 企業이 選擇할 原則의 繼續的인 적용여부를 시험해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公認會計士會는 이 書翰에서 1920年代 惡用되었던 報告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5가지의 原則을 제시하였다.⁽²⁶⁾ 이것은 당시에 기업의 財務報告와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惡用現象 즉, 未實現利益을 利益으로 認識하는 問題, 費用으로 認識하여야 할 項目을 資本剩餘金에서 공제하는 問題, 그리고 自己株式에 대한 配當을 利益으로 記錄하는 問題 등을 포함한 5가지의 原則을 제시함으로써 財務報告上の 利益操作을 금지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이상의 會計 5原則에 酿出資本 및 資產評價에 관한 여섯 번째의 會計原則이 1934年에 同協會의 멤버 및 會計原則究研特別委員會에 의해서 채택되었다. 이 여섯개의 會計原則은 1939年 9月에 公刊된 『會計研究公報』(Accounting Research Bulletin, ARB) 第1號와 同 第43號(1953年 6月) 第1章에 收錄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나타난 會計 6原則(보통 會計 5原則이라 칭함)은 投資者保護을 위하여

④ Special Committee on Cooperation with Investment Bankers.

⑤ Special Committee on Inventories.

⑥ Special Committee on Cooperation with the Stock Exchange.

⑦ Special Committee on Development of Accounting Principles.

Stephen A. Zeff, *Foreign Accounting Principles in Five Countries; A History and an Analysis of Trends* (Stipes Publishing Company, 1972), pp. 112-129.

(26) AIA, *Audits of Corporate Accounts* (New York, 1934), pp. 12-13.

이루어져야 할 會計를 6개의 原則으로 요약한 것이며, 이는 美國會計原則이 成文化된 嘴矢가 된다.

(2) 會計節次委員會의 活動과 成果

AIA는 1933年에 7名의 멤버로 구성된 會計原則開發特別委員會(Special Committee on the Development of Accounting Principles)를 두어 1939年까지 계속하였고, 이에 이어 1936年에는 會計節次委員會(Committee on Accounting Procedure)를 設置하고, 1938年에 가서는 21名의 멤버로構成된 委員會로 확대 발전시켰다. 이 委員會는 會計原則 및 會計節次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意見書를 公刊하기로 하고, 1959年 8月까지 20年동안 ‘일반적으로 認定된 原則’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會計研究公報』(Accounting Research Bulletins)를 51號까지 發刊하였다. 최초의 42通의 『會計研究公報』 중 8通은 會計用語委員會의 報告書로서, 이는 1953年에 『會計用語公報 第1號』(Accounting Terminology Bulletin No. 1)의 <檢討와 概要> (Review and Résumé)란 名稱으로 단독 公刊되었다. 나머지 34通의 『會計研究公報』 중 31通을 통합하여 同 43號로서 改正 편집되었으며, 나머지 3通은 戰時中の 會計問題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理由에서 削除되었다.

이들 『會計研究公報』 第43號와 第44號로부터 第51號에 걸쳐 나타나 있는 일반적인 會計原則의 名稱은 다음 表와 같다.

ARB No.	發表年月	會計研究公報(ARB)의 名稱
No. 43	1953 6	Restatement and Revision of Accounting Research Bulletins
No. 44	1954 10	Declining-balance Depreciation
No. 44(修正)	1958 7	Declining-balance Depreciation
No. 45	1955 10	Long-term Construction-Type Contracts
No. 46	1956 2	Discontinuance of Dating Earned Surplus
No. 47	1956 9	Accounting for Costs of Pension Plans
No. 48	1957 1	Business Combinations
No. 49	1958 4	Earnings per Share
No. 50	1958 10	Contingencies
No. 51	1959 8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會計研究公報』에 나타난 會計原則은 會計實務界에서 解決해야 할 問題가 나타나면 이것에 취급되어야 할 方向을 提示하는 형식으로 個別的 問題를 중심으로 제정되었다는 特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 흐르는 基本的 思考는 대략 다음과 같은 路線을 이탈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이루어졌다.

- ① 收益은 보통 販賣時點에서 實現되며, 이 때 記錄하는 것으로 한다.

- ② 資產은 原價 이상으로 評價되어 서는 아니된다.
- ③ 費用은 便益을 舒緩한 期間에 記錄되어야 한다(對應概念). 그리고 利益은 當期業績主義(current operating performance concept)에 따라 報告되어야 한다.
- ④ 完全公開와 計定의 적절한 分類는 財務報告에 있어서 중요한 要素가 된다.
- 또한 會計用語委員會는 1920年에 설치되어 1953부터 1957년까지 다음과 같은 4가지 『會計用語公報』(Accounting Terminology Bulletins)를 公刊하였다.

Bulletin No.	發 表 年 月	會計用語公報의 名稱
No. 1	1953 8	Review and Résumé
No. 2	1955 3	Proceeds, Revenue, Income, Profit and Earnings
No. 3	1956 8	Book Value
No. 4	1957 7	Cost, Expense and Loss

이들 『會計用語公報』를 제정한 委員會委員들은 주로 會計節次委員會 委員으로부터 選出되어 構成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表明된 會計用語에 관한 定義는 『會計研究公報』에 나타난 會計思考와 다름이 없는 線에서 定義되었다. 예를 들면 貸借對照表를 定義하는데 있어서 損益計算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反映되었고, 價值(value)를 정의하는데 原價主義를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收益을 定義하는데 收益認識의 일반기준을 적용한 것은 그例가 된다.

이와 같이 AIA에서는 『會計研究公報』와 『會計用語公報』를 통해 會計의 懸案問題에 관한 AIA의 입장을 명백히 표명하여 왔었다. 그러나 『會計研究公報』는 會計에 관한 개별적인 問題點을 수시로 同會計士會의 이름으로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들 内容에 있어서 相互論理的 일관성을 갖는 體系的인 것이 되지 못했다. 이들 報告書는 個別問題를 歸納的으로 解說 또는 規定하여 報告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原則의 内容도 자연히 具體的으로 표현되어 광범한 會計原則이 지녀야 할 包括性과 融通性이 결여되어 바라는 대로의 會計原則의 成文化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 會計原則審議會의 活動과 成果

스토리(Reed K. Story)는 會計原則의 發展段階를 會計原則에의 관심의 정도에 따라 3期로 구분하고 있다. 第1期에 속하는 期間은 1932年부터 1940年의 第2次 世界大戰이 발발하기 前까지의 期間으로서 이 時期에는 原則을 明確히 하려는 個個人의 努力이 試圖되었고 중요한 會計團體에 의한 研究計劃이 시작되었다는 特色을 가지고 있으나 이때까지는 「一般的으로 認定된」(generally accepted) 原則의 리스트는 아직 출현되지 않은 時期이다.

第2期는 1946年부터 1953年에 걸친 時期로서 이期間은 주로 美國會計士會(AIA)와 美國會計學會에 의하여 原則에 관한 制度的 起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그 特徵의 면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57年부터 1960年代 初期의 第3期에 속하는 期間은 美國公認會計士會의 實用主義的 접근방법과 理論的이고 嚴密한 原則을 體系的으로 확립하려는 美國會計學會의 研究를 결합시키려는 會計原則審議會(Accounting Principles Board, APB)의 努力이 헐저하게 나타난 時期로서의 特徵을 가지고 있다.⁽²⁷⁾

사실상 초기단계에 AIA가 취한 會計原則의 成文化 노력을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財務會計上 現實的으로 발생하는 個別的 問題에 관하여 『會計研究公報』나 『會計用語公報』 등을 통해 同會의 公식적인 見解를 표명함으로써, 會計實務의 指針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公報는 일반의 會計慣行을 歸納的 方法에 따라 個別 問題點에 관하여 研究發表한 것이기 때문에, 原則의 内容은 구체적으로 표명되었다. 그러므로 AIA의 會計原則은 당시 다음에 고찰할 美國會計學會의 會計原則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論理性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理想的인 것이 되지 못하였다. 이 점을 重視하여 당시의 AIA會長으로 당선된 제닝스(A.R. Jennings)는 1957年 10月에 會計의 基本的 假定과 最善의 原則을 檢討하기 위한 研究機構를 構成하여 產業과 職業의 會計士들을 指導할 새로운 方法을 研究할 것을 提案하였던 것이다.⁽²⁸⁾ 제닝스의 提案에 따라 1957年 12月에 研究計劃 特別委員會(Special Committee on Research Program)가 設置되었다. 동 委員會에서는 1958年에 “會員을……指導하기 위한 일반적으로 認定된 會計原則의 내용을 明文化할 수 있어야 한다”⁽²⁹⁾고 勸告하게 되었다. 이 目的을 위하여 美國公認會計士會를 再編成하고 會計研究部(Accounting Research Division)와 會計原則審議會(Accounting Principles Board, APB)가 發足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會計研究部와 APB는 研究計劃特別委員會의 勸告에 따라 탄생된 것으로서, 당시 AICPA의 再編成目的은 다음과 같은 4段階를 거쳐 財務會計에 관한 광범한 會計問題를 해결하려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① 基本的 公準의 設定 ② 廣範한 會計原則의 設定 ③ 廣範한 狀況에 原則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規則(rules) 및 指針(guides)의 設定 및 ④ 研究活動이 그것이다.⁽³⁰⁾

會計研究部에 있어서의 研究活動은 同部의 會計研究 스태프에 局限해지 이루어진 것은 아

(27) Reed K. Story, *The Search for Accounting Principles*, Scholars Book Co., 1964, p.3.

(28) Alvin R. Jennings, "Present-Day Challenges in Financial Reporting," *Journal of Accountancy* (January, 1958), pp. 28-34.

(29) "Report to Council of the Special Committee on Research Program," *Journal of Accountancy* (Dec., 1958), p. 62.

(30) *Ibid.*, p. 63.

나고, 그 밖의 研究員에 의해서도 수행되었다. 研究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 결과가 APB의 이름으로 發表되기 전에 이를 공개하여, 多角度로 批判과 檢討를 받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AICPA의 『會計研究調查』(Accounting Research Study, ARS)는 美國公認會計士會의 公式報告書가 아니고 會計研究部長의 權限에 의해서 發刊된 것이다.

會計原則을 樹立하려는 이와 같은 새로운 방법은 종래의 方法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特徵을 가지고 있다.

① 會計研究部는 會計原則을 發展시키고 이를 實務에 적용시키는데 있어서 演繹的 方法을 따르려고 하였다.

② 會計研究部는 APB와 協力關係를 갖는다.

③ 『會計研究調查』는 APB에서 最終的인 決定을 내리기 전에 이를 公開하여 論議할 수 있도록 한다.

④ 『會計研究調查』는 結論에 도달할 수 있는 상세한 論議를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趣旨에서 研究發表된 것으로서 『會計研究調查』(Accounting Research Study, ARS) No. 1과 No. 3이 있다. 이들은 각각 1961年과 1962年에 「會計의 基本的 公準」(The Basic Postulates of Accounting)과 「企業會計原則試案」(A Tentative Set of Broad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s)이란 명칭으로 발표되었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APB의 見解로서가 아니고, 會計研究部의 指揮에 의한 무닛츠(M. Moonitz)의 ARS No. 1과 스프라우스(R.T. Sprouse)와 무닛츠(M. Moonitz)의 ARS No. 3으로 發表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무닛츠와 스프라우스에 의한 會計公準 및 會計原則에 관한 基本的研究가 발표되긴 하였지만, APB에서는 이를 ‘公準’ 및 ‘原則’이 會計思想에 크게 貢獻한 바는 있으되, 이는 當時의 일반적으로 認定된 會計實務와는 너무나 격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³¹⁾ 이를 受諾하지 않고 現存하는 會計原則에 관한 새로운 研究를 그레이디(Paul Crady)에게 委任하였다. 1965年에 그레이디의 이름으로 發表된 ARS No. 7의 「一般的으로 認定된 企業會計原則目錄」(Inventory of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s)은 이와 같이 하여 發表된 것이다.

ARS No. 7의 研究目的은 會計原則에 관한 基本的 諸概念에 관한 論議를 한 다음에, 現行의 會計原則 및 實務를 APB가 나타나기 이전의 諸公報를 요약하여 이를 體系化한 것이다. 따라서, ARS No. 7을 ARS No. 1 및 ARS No. 3과 비교하여 볼 때, ARS No. 1과

(31) APB Statement No. 1. 참조.

ARS No. 3은 論理的 推論에 따라 會計의 基本的 諸概念을 演繹的으로 展開하여 하나의 組織的인 體系를 갖도록 作成된 데 반해서, ARS No. 7은 實用主義的이고 現實的인 입장에서 會計原則을 歸納的으로 導出하여 이를 나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ARS No. 1이나 ARS No. 3에 비하면 ARS No. 7이 갖는 實務界에의 受容可能性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RS No. 7 역시 會計原則審議會가 기대하였던 것과 같은 광범한 會計原則 (broad accounting principles)이 되지 못하여, ARS No. 7이 발표된 1965年에는 APB 意見書에 관한 特別委員會(Special Committee on Opinions of the APB)가 會計의 基本的 問題를 다시 研究할 것을 再確認하였던 것이다.⁽³²⁾

이에 대한 反應으로 나타난 것이 그로부터 5年間의 연구끝에 1970年 10月에 發表된, APB 第4報告書(APB Statement No. 4)인 “企業財務諸表의 基礎概念 및 會計原則”(Basic Concepts and Accounting Principles Underlying Financial Statements of Business Enterprises)⁽³³⁾이 있다. 그러나 APB 第4報告書도 意圖한 바와 같은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會計原則審議會(Accounting Principles Board, APB)는前述한 바와 같이 1959年에 美國公認會計士會의 組織改編에 따라 나타나게 된 것이다. 同 審議會는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을 成文化하고 적절한 會計實務를 추구하며, 또 會計上의 未解決의 論爭的 問題點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設立되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發表되는 公式的인 報告書는 전술한 會計研究部의 연구결과에 기초를 두어 論理上 모순이 없는 것에 限定하였다. 同 審議會의 멤버는 職業的인 會計士·業界·學界 및 政府에서 選拔한 18~21名으로 構成하도록 하였고, 同審議會의 公式的 報告를 하기 위해서는 2/3 이상의 同意를 얻도록 되어 있었다.

APB Statement No.	發表年月	APB 報告書名稱
No. 1	1962 4	Statement by the Accounting Principles Board
No. 2	1967 9	Disclosure of Supplemental Financial Information by Diversified Companies
No. 3	1969 6	Financial Statements Restated for General Price-level Changes
No. 4	1970 10	Basic Concepts and Accounting Principles Underlying Financial Statements of Business Enterprises

(32) “Summary of the Report of the Special Committee on Opinions of the Accounting Principles Board.” *Journal of Accountancy* (June 1965), pp. 12, 14, 16.

(33) “Basic Concepts and Accounting Principles Underlying Financial Statements of Business Enterprises,” APB Atatement No. 4, (New York: AICPA, 1970).

會計原則審議會에서는 機構가 解體된 1973年 6月末까지 다음과 같은 4가지『報告書』(APB Statements)와 31가지『意見書』(APB Opinion)를 發表하였다.

ABP Opinion No.	發表年	意見書名稱
No. 1	1962	New Depreciation Guidelines and Rules
No. 2	1962	Accounting for the "Investment Credit"
No. 3	1963	The Statement of Source and Application of Funds
No. 4	1964	Accounting for the "Investmens Credit" (Amending No. 2)
No. 5	1964	Reporting of Leases in Financial Statements of Lessee
No. 6	1965	Status of Accounting Research Bulletins
No. 7	1966	Accounting for Leases in Financial Statements of Lessors
No. 8	1966	Accounting for the Cost of Pension Plans
No. 9	1966	Reporting the Results of Operations
No. 10	1966	Omnibus Opinion—1966
No. 11	1967	Accounting for Income Taxes
No. 12	1967	Omnibus Opinion—1967
No. 13	1969	Amending Paragraph 6 of APB Opinion No. 9, Application to Commercial Banks
No. 14	1969	Accounting for Convertible Debt and Debt Issued with Stock Purchase Warrants
No. 15	1969	Earnings per Share
No. 16	1975	Business Combinations
No. 17	1970	Intangible Assets
No. 18	1971	The Equity Method of Accounting for Investments in Common Stock
No. 19	1971	Reporting Changes in Financial Position
No. 20	1971	Accounting Changes
No. 21	1971	Interest on Receivables and Payables
No. 22	1972	Disclosure of Accounting Policies
No. 23	1972	Accounting for Income Taxes—Special Areas
No. 24	1972	Accounting for Income Taxes—Equity Method Investments
No. 25	1972	Accounting for Stock Issued to Employees
No. 26	1972	Early Extinguishment of Debt
No. 27	1972	Accounting for Lease Transactions by Manufacturer Lessors
No. 28	1973	Interim Financial Reporting
No. 29	1973	Accounting for Nonmonetary Transactions
No. 31	1973	Disclosure of Lease Commitments by Lessees

『報告書』는 본질적으로 教示的인 性格을 갖는 것으로서 公式的인 것이 되지 못한데 반해, 『意見書』는 APB의 公式的 意見으로서 발표되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評價할 때 APB의 활동은 能率的인 것이 되지 못하였다. 즉, APB는 個別問題에 대한 意見書를 제출하여 個別問題에 관한 會計處理方向을 제시하였으나, 이들이 全般的 體系를 갖는 基本的 會計原則을 制定하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非能率的인 活

動에 대한 非難 때문에 AICPA는 1971年에 Wheat Committee를 만들어, 會計原則을 制定 할 때 보다 效率的인 方法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1972年 5月에 AICPA의 理事會는 同委員會의 提言에 따라, AICPA의 理事會에서 9名의 理事を 選定하여 독립된 機關인 FAF(Financial Accounting Foundation)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곳에 財務會計基準審議會(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FASB)를 설치하여 종래의 APB業務를 계승받아 수행하기로 하고, APB를 終熄시키기도 한 것이다.

3. 美國會計學會에 의한 會計原則의 展開

美國會計學會(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AAA)는 1916年에 美國大學會計學教授協會(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Instructors in Accounting, AAUIA)란 명칭으로 출발하여 1935年 12月에 오늘날의 名稱으로 바뀌었다.⁽³⁴⁾ 출발 당시의 同協會의 公式的인組織 目的是 ① 研究意欲을 고취시키고 後援하며 ② 會計原則 및 基準을 발전시켜 이를 實務에 適用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려는데 있었다. 이와 같은 目的에 따라, AAA는 會計原則·會計基準 및 會計理論에 관한 一連의 報告書와 아울러 多數의 刊行物을 내었다.

(1) 1936年의 會計原則과 그 후의 改正

1936年에 AAA의 常任委員會는 『會社報告書에 관한 會計原則試案』(*A Tentative Statement of Accounting Principles Affecting Corporate Reports*)을 발표하였다. AAA 常任委員會에서 취하고 있는 會計原則制定의 방향은 企業이 財務諸表를 작성할 때 基本的으로 준수하여야 할 基礎原理를 마련하는 것이다. 1936年的 『試案』은 美國의 會計團體로서는 會計原則을 一貫性있게 통합하여 公表한 최초의 勞作이긴 하였으나, 會計原則의 모든 分野를 망라하지 못하였고, 1920年代에 會計實務界에서 그릇된 慣行으로 뇌어 있던 特定 領域만을 강조하여 原則으로 나타낸 것도 있다. 따라서, 거기에 提示된 原則 중 어떤 것은 基本原則이라고 하기보다는 特殊한 規則(rule) 또는 方法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

1936年的 『試案』에 이어 常任委員會는 1941年에 『會社財務諸表의 基礎가 되는 會計原則』(*Accounting Principles Underly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이란 改正版을 냈다. 1936年的 『試案』의 内容이 原價와 價值, 利益의 測定, 資本金과 剩餘金의 3部로 構成된데 비하여, 1941年的 改正版은 原價, 收益, 利益, 資本으로 4分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基本的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1946年에 AAA는 會計原則改正委員會를 설치하고, 이 機構를 通해서 1948年에는 『會社

(34) AAA의 歷史에 관해서는 Stephen A. Zeff, *The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Its First Fifty Years* (Evanston, Ill.: 1966)를 참조.

財務諸表의 基礎가 되는 會計概念과 諸基準』(*Accounting Concepts and Standards Underly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이라는 改正版을 公刊하였다. 1948年の 이 改正版에서는 ‘原則’(principles)이란 用語를 사용하지 않고 ‘基準’(standards)란 用語를 사용하였다. 그 理由는 ‘原則’이란 말은 同報告書가 意圖하고 있는 이상의 普遍的인 正常性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는 일반의 批判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基準’이란 말로 바꾸어 사용한 것이다. 1948年 改正版은 1941年의 것에 비하여 基本的인 문제에 약간의 變化가 있었다. 그 구체적인 構成內容은 資產, 利益, 負債, 株主持分 및 財務諸表의 5部로 나누어져 설명되어 있다.

1949年에는 會計研究 및 調査活動을 계속하기 위하여 會計concept 및 基準委員會(Committee on Accounting Concepts and Standards)가 AAA에 設置되었다. 同委員會는 1950年부터 1954年까지 1948年版 報告書를 명확히 하고, 또 發展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8個의 補足的 報告書(Supplementary Statements)를 公刊하였다. ① 準備金과 留保利益 ② 物價水準變動과 財務諸表 ③ 流動資產과 流動負債 ④ 會計原則과 課稅所得 ⑤ 會計上の 修正 ⑥ 在庫資產評價와 物價水準의 變動 ⑦ 聯結財務諸表 ⑧ 公表財務報告書를 위한 公開明示의 會計基準。

1955年에 AAA는 會社財務諸表의 基礎를 이루는 會計concept 및 基準委員會(Committee on Concepts and Standards Underly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를 설치하고, 1948年の 改正版을 再改正하기 위한 準備에 들어가 『會社財務諸表를 위한 會計 및 報告基準—1957年 改正版』(*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s for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 1957 Revision*)을 公刊하였다. 이 報告書에서는 基礎的 概念(underlying concepts)으로서 企業實體, 企業의 繼續性, 貨幣的 測定, 實現 등 네 概念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體系는 資產, 利益決定, 持分 및 公開明示의 基準의 順으로 이루어져 있다. 1936年, 1941年, 1948年の 諸報告書와 비교하여 볼 때, 1957年の 報告書가 갖는 差異點은 特定의 會計規則이나 基準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會計理論의 基礎로서 기본적 會計concept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그후 1957年の 改正版에 대한 다섯 가지의 補足的 報告書가 AAA의 特別委員會에서 公刊되었다. 補足的 報告書 第1號인 「土地・建物 및 設備의 會計」(*Accounting for Land, Buildings and Equipment*)와 第2號인 「在庫資產의 測定」(*Inventory Measurement*)은 1957年版 報告書의 擴張으로 1964年에 公刊되었다. 이곳에서는 現在原價(current cost) 또는 代替原價(replacement cost)의 채용문제와 아울러 保有利得 및 損失(holding gains and losses)에 관해서 論述하고 있다. 나머지 3가지는 별도의 委員會에서 實現概念, 實體concept 및 對應

概念 등에 관해서 1965年에 公刊하였다.

(2)『基礎的 會計理論에 관한 報告書』

美國會計學會(AAA)가 1916年에 発족하였으므로 1966年은 AAA의 第50週年을 맞이하는 해가 된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AAA는 1964年에 基礎的 會計理論에 관한 報告書作成準備委員會를 設置하고, 앞에서 설명한 종래의 報告書의 형식 및 내용과는 다른 基礎的 會計理論에 관한 일관된 報告書의 作成을 위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同 委員會에서는 1966年에 『基礎的 會計理論에 관한 報告書』(*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ASOBAT*)를 발표하였다.

*ASOBAT*에서는 會計를 情報組織으로 이해하고, 會計에서 情報가 有用한 것이 되기 위해서 갖추지 않으면 안 될 屬性을 會計基準으로 결정하였다. 이 屬性은, ① 目的適合性(relevance) ② 檢證可能性(verifiability) ③ 不偏性(freedom from bias) ④ 計量可能性(quantifiability)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또한, 情報傳達에 대한 다섯 가지의 指針도 아울러 提示하고 있다.

종래의 會計報告書가 企業을 中心으로 한 營利企業에 관한 會計를 目標로 하고 있는데 반해서, *ASOBAT*는 非營利組織에도 적용할 수 있는 會計理論을 展開하였으며, 또한 管理會計도 包括하는 광범위한 會計基準을 提示하였다는 점은 同 報告書가 이루어 놓은 커다란 業績이라 아니할 수 없다. *ASOBAT*에서는 外部利害關係者에게 報告하기 위해서 作成되는 報告書가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勸告하고 있다. ① 歷史的 原價와 現在原價(current cost)를 동시에 報告하는 多欄式財務諸表(multicolumn financial statement)를 작성할 것 ② 損益計算書의 費用分類에 있어서 固定費와 變動費로 分類하여 報告할 것 ③ 製品別 및 部門別로 資產, 費用, 收益을 報告할 것.

*ASOBAT*에서 提示한 基準에 따라 現行의 會計實務를 評價하기 위하여 AAA는 外部報告, 管理的 意思決定모델, 非營利組織 및 國際會計에 관한 諸委員會를 각각 設置하고 提示된 會計基準이 活用될 수 있는 方案을 講究할 것을 提案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各各의 委員會에서는 그 基準을 각각의 方法으로 적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기타 研究刊行物의 出版

美國會計學會는 季刊紙인 *The Accounting Review*를 發行하는 이외에 1937年 이래로 다음과 같은 모노그래프를 出刊하여 會計理論의 發展에 크게 貢獻하였다.

Monograph No. 1 *Principles of Public-Utility Depreciation*, by Perry Mason

Monograph No. 2 *Financial Statements*, by M.B. Daniels

Monograph No. 3 *An Introduction to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by W.A. Paton
and A.C. Littleton

Monograph No. 4 *The Entity Theory of Consolidated Statements*, by Maurice Moonitz

Monograph No. 5 *Structure of Accounting Theory*, by A.C. Littleton

Monograph No. 6 *The Philosophy of Auditing*, by R.K. Mautz and H.A. Sharaf

Monograph No. 7 *An Inquiry into the Nature of Accounting*, by Louis Goldberg

이 중에서 특히 Monograph No. 3인 『會社會計基準序說』은 美國의 會計文獻 中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古典 中의 하나이며, 우리나라의 會計學教育에 미친 영향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AAA는 1969年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Studies in Accounting Research*를 發刊하여 會計理論의 發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것은 會計原則의 制訂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으나 會計學의 發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研究書番號	發表年	研究者	研究題目
Vol. # 1	1969	T.R. Dyckman	Investment Analysis and General Price-Level Adjustments
Vol. # 2	1969	Baruch Lev	Accounting and Information Theory
Vol. # 3	1969	Arthur L. Thomas	The Allocation Problem in Financial Accounting
Vol. # 4	1970	Bertrand Horwitz	Accounting Controls and the Soviet Economic Reforms of 1966.
Vol. # 5	1972	Gerald A. Feitham	Information Evaluation
Vol. # 6	1973	The Committee on Auditing Concepts	A Statement of Basic Auditing Concepts
Vol. # 7	1973	Carl Beidleman	Valuation of Used Capital Assets
Vol. # 8	1974	Maurice Moonitz	Obtaining Agreement on Standards in the Accounting Profession
Vol. # 9	1974	Arthur L. Thomas	The Allocation Problem: Part Two
Vol. # 10	1975	Yuji Ijiri	Theory of Accounting Measurement
Vol. # 11	1975	Russell M. Barefield	The Impact of Audit Frequency on the Quality of Internal Control
Vol. # 12	1976	James A. Anderson	A Comparative Analysis of Selected Income Measurement Theories in Financial Accounting
Vol. # 13	1976	Theodore J. Mock	Measurement in Accounting Information Criteria
Vol. # 14	1976	Robert E. Jensen	Phantasmagoric Accounting
Vol. # 15	1977	Hiroyuki Itami	Adaptive Behavior: Management Control and Information Analysis
Vol. # 16	1979	A. Rashad Abdel-Khalik and Thomas F. Keller	Earnings or Cashflows: An Experiment on Functional Fixation and the Valuation of the Firm.

4. 證券去來委員會의 會計原則에 대한 立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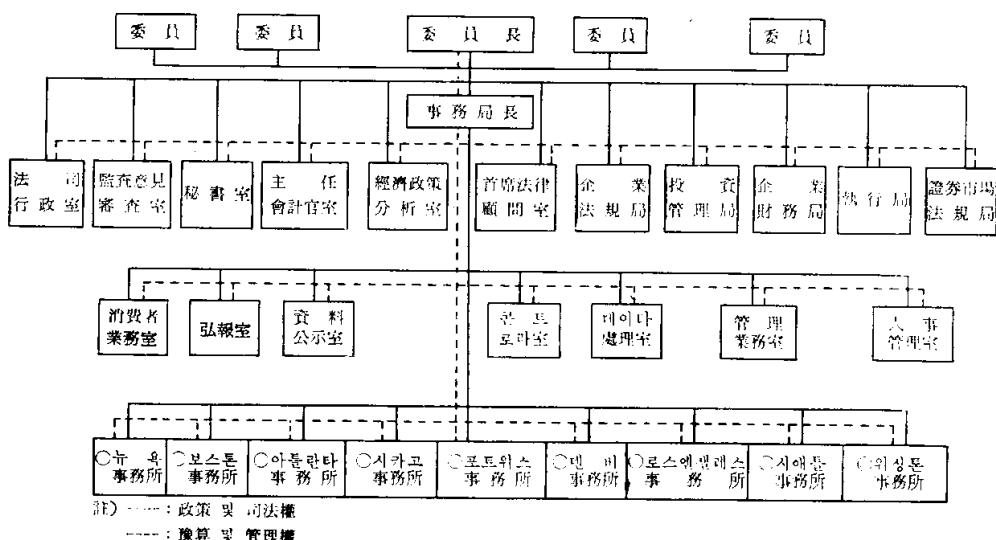
(1) 證券去來委員會의 發足과 機構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29년부터 시작된 大恐慌에 충격을 받고서 美國議會는 株式을 發行하는 機關이나 多數의 株主를 가지고 있는 者가 一般大衆에게 株式을 販賣할 때 중대한 情報를 投資者에게 提供하여야 한다는 것을 骨字로 한 證券法(Securities Act of 1933)을 1933년에 통과시켰고 1934年에는 投資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企業의 情報를 계속적으로 公開하여야 할 것을 規定한 證券去來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證券法과 證券去來法을 포함한 몇몇의 이와 관련된 法律을 執行하기 위한 機關으로서 1934년에는 證券去來委員會(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라는 것을 創設하였다.

證券去來委員會는 行政機能 이외에 準立法機能과 準司法機能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權限을 부여받고 있으며 이것은 政府로부터 獨立된, 超黨派의 委員會로서 보통 5년 임기인 5名의 委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委員은 大統領이 上院의 同意를 얻어 任命하되 同一政黨委員의 委員이 3名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委員長(chairman)은 委員 중 1名을 大統領이 指名하도록 되어 있다.

證券去來委員會는 주어진 業務를 수행하기 위한 많은 局(division)과 室(office)을 設置하고 있는데 이의 組織圖를 보면 다음과 같다.

〈圖 -1〉 SEC의 業務組織圖



資料源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The Work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8).

證券去來委員會는 登錄企業으로 하여금 충분하고 적정한 公開를 실시하도록 하고 각종의 證券法을 위반하는 有價證券의 去來를 방지·적발하기 위하여 5개의 業務局(operating divisions)을 설치하는 한편 이들을 會計, 經濟, 法律, 行政 등 분야의 전문가로서 側面으로부터 지원하기 위한 스탠드(staff office)을 두고 있다. 이곳에서는 그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部署의 役割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³⁵⁾

① 企業財務局(Division of Corporation Finance) :當局은 각종의 證券法에 따라서 SEC가 관할하는 企業의 報告基準을 확립하고 이것을 준수하도록 하며 프록시·스테이트먼트의 公開基準을 설립하고 각종의 證券關係諸法에 따라 SEC에 제출되는 申告書, 趣指書, 年次 및 四半期報告書 프록시·스테이트먼트 등에 대해서 적정한 公開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調査한다. 그렇기 때문에 SEC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部署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위의 報告書에 포함되는 財務諸表는 公認會計士의 監查 또는 리뷰를 받게 되는데當局은 公認會計士監查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아울러 監視한다.

② 證券市場法規局(Division of Market Regulation) :當局은 投資顧問法(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에 따라 등록한 證券去來所나 證券業者(Brokers and Dealers)를 地方局과 共同으로 監督한다. 有價證券의 去來에 있어서 不正行爲를 방지하고 新規로 有價證券을 發行할 때 價格安定操作에 관한 規則에 準據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監視한다. 法令을 위반한 去來所나 證券業者에 대해서 最高一年間의 業務停止命令(stop order)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權限을 갖고 있다.

③ 執行局(Division of Enforcement) :地方局에 대한 實施活動의 調査 및 指示, 각종의 證券法에 따라 수행되는 調査의 指揮, 強制調査의 개시, 告訴 여부에 관한 決定 등이當局의 責任으로 이루어진다. 또한當局은 刑事訴追를 위해 司法省에 送付된 사건을 調査할 責任이 있어 法務官室(Office of the General Counsel)과 밀접한 協力關係에 있다.

④ 企業法規局(Division of Corporate Regulation) :當局은 1935년 法의 管理와 破産法(Chapter X of the Bankruptcy Act)에 따라 裁判所에 助言하는 것을 주된 業務로 한다. 1935년 法에 의하면 大規模의 公共事業體는 單一事業을 영위하지 않으면 안되고 複雜한 組織을 構成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다. 또한 同法은 公共事業體가 有價證券을 發行한다던가 賣買하는 문제, 그밖의 企業에 投資하는 것을 規制하고 있다.

(35) K. Fred Skousen, *An Introduction to the SEC*, 2nd ed., South-Western Publishing Co., 1980, pp. 9-15.

⑤ 投資管理局(Division of Investment) : 當局은 1960년에 제정된 投資會社法 및 投資顧問法을 管理한다. 投資會社(Investment Companies)나 證券業者(dealers)의 서비스 행위를 調査하는 임무는 當局에서 담당하고 있다.

⑥ 主任會計官室(Office of the Chief Accountant) : 當室은 SEC에 대해서 會計 및 監査에 관한 전문적인 助言을 한다. SEC는 證券法에 따라서 會計基準을 制定할 수 있는 權限을 부여받고 있는데 主任會計官(Chief Accountant)은 그 第一의 責任者이다. 그는 AICPA 및 FASB의 代表와 밀접한 連絡關係를 유지하고 있다.

(2) 證券去來委員會와 會計原則

1933年的 證券法이 통과됨에 따라 證券去來委員會는 會計原則制定의 權限을 賦與받았으며 이 법에 따라 同委員會에 제출하는 財務諸表는 證券去來委員會에서 규정한 會計原則을 따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나 1936年부터 1938年에 걸쳐 同委員會는 제출되는 財務諸表를 작성하는데 적용할 一組의 會計原則을 SEC에서 제정할 것인가의 與否를 둘러싸고 열띤 論爭을 벌인 결과 主任會計官(Chief Accountants)의 설득으로 會計原則을 제정하는 問題는 專門會計機關에 맡기기로 1938年に 決定을 보았다. 이같은 政策은 『會計連續通牒』(Accounting Series Release) 第 4號에 反映되어 “實質的으로 權威 있는 支持”(substantial authoritative support)를 받고 있는 會計原則이나 證券去來委員會 또는 主任會計官에 의해서 마련된 規則(rules), 規定(regulations) 또는 그밖의 公式的인 報告에 입각하여 마련된 財務諸表에 局限해서 받아들일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會計專門機關에 대해서는 會計 實務의 多樣性을 줄이도록 壓力を 가하는 한편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SEC가 會計原則의 제정업무를 수행할 것임을明白히 하였다.

이와 같이 SEC는 본래 會計節次를 制定할 수 있는 權限을 賦與받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會計原則을 發展시킨다고 하는 면보다는 全般的이고 公正한 資料를 公開한다는 데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SEC는 會計原則을 發展시키는 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기보다는 AICPA와 協力關係를 갖고 APB『意見書』를 통해서 間接的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AICPA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APB『意見書』를 최종적으로 公表하기 전에 그 草案을 SEC에 제출하여 承認을 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와 같이 볼 때 SEC와 會計專門機關의 관계는, 前者를 Top-management라고 할 것 같으면 後者는 Lower-management의 입장에 있는 관계로 볼 수 있다.⁽³⁶⁾

(36) Charles T. Horngren, "Accounting Principles: Private or Public Sector?" *Journal of Accountancy* (May 1972), p. 38.

SEC와 財務會計基準審議會(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FASB)와의 關係도 역시 1973年 後半期에 SEC『會計連續通牒』第150號에서 明確하게 規定되었다. 이곳에서는 “FASB에서 公表한 原則, 基準, 指針은 同委員會에서 實質的으로 權威 있는 支持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FASB의 공표에 반하는 것은 이와 같은 支持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證券去來委員會의 機能과 관련하여 會計原則이란 면에서 同委員會가 公표한 規程과 意見書는 다음과 같은 4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① 『會計連續通牒』(Accounting Series Release, ASR) : 이것은 중요한 會計問題 및 監查問題라든가 財務諸表 및 중요한 會計事項에 관한 證券去來委員會의 政策에 관해서 同委員會 또는 同委員會의 主任會計官(Chief Accountant)이 수시로 通牒形식으로 그의 意見을 公표한 것이다. 1937年 4月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每年 發表되어 그 數는 1981년 12月末 현재로 299號까지 發表하였다.

② 規則 S-X(Regulation S-X) : 이것은 聯邦證券法에 따라 SEC에 提出하는 Form S-1 등 發行市場에 대한 登錄申告書 및 Form 10-K 등 流通市場에 대한 年次報告書에 記載되는 財務諸表의 作成方法과 公開內容 등을 規定한 會計規則이다. 이것이 成文化된 것은 1940년이나 그후 여러차례 대폭적인 改正이 있었고 최근에는 1980년 9월에도 GAAP와의 調整 등의 이유로 크게 改正을 단행하였다. 현행의 Regulation S-X는 모두 12條로 構成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第1條 規則 S-X(Regulation S-X)의 適用範圍 및 規則에서 사용되는 用語의 解釋

第2條 會計士의 資格 및 獨立性, 監查報告書

第3條 全般的으로 적용되는 規則

第4條 聯結 및 結合財務諸表

第5條 一般商工業會社의 財務諸表

第6條 내지 第10條 特殊業種을 영위하는 會社에 적용되는 財務諸表規則

第11條 其他 株主持分計算書의 内容

第11條 財務狀態變動表

第12條 附屬明細表의 樣式과 内容

③ 規則 S-K(Regulation S-K) : 이것은 1933년의 證券法과 1934년의 證券去來法에 따라 SEC에 提出되는 登錄申告書, 定期的 報告書, 委任狀說明書 및 議案說明書에서 公開할 것을 義務화하고 있는 非財務的情報를 규제하는 統一的인 公開規則이다. 이의 目的是 각종의

樣式 및 報告書에 공통된 公開規定을 단일의 規則으로 統合하여 33년의 證券法과 34년의 證券去來法에서 요구하고 있는 公開要求事項을 급히 實效性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成文化된 것은 1977년이며 현재까지 12項目이 公表되고 있다.

④ SEC스털에 의한 適用指針(Staff Accounting Bulletin, SAB) : 이것은 1975년 이래로 公表되고 있는 것으로서 앞서 설명한 規則 S-X나 規則 S-K와 같이 法的 效力を 갖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登錄會社가 規則(regulation)이나 『會計連續通牒』(ASR)을 준수하는 데 참고가 되는 適用指針이다. 그의 内容은 事實關係((facts), 이에 관련된 質問事項(question), 그리고 그에 대한 回答(interpretative response)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約 40개가 공표되어 있다.

(3) 證券去來委員會가 會計에 미치는 影響

앞에서도 言及한 바 있거니와 1929년에 시작된 大恐慌은 證券의 價格操作, 虛偽報告에 의한 證券의 詐欺的 賣買, 過度의 投機, 企業內部者에 의한 情報의 惡用 등 企業이 投資者에게 적정한 情報를 提供하지 못한 것이 原因의 하나가 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로서 건전한 證券市場을 育成하는 한편 不正한 價格操作이나 去來를 禁止하고 證券發行者가 중요한 事項에 관해서 완전하고公正한 情報의 公開(full and fair disclosure)는 社會의 으로 불가결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어 美聯邦議會는 證券去來에 관한 基本法으로서 1933年的 證券法과 1934年的 證券去來法을 制定하였다. 그리고 證券去來委員會는 1934年法을 契機로 하여 창설되어 그때까지 1933年的 證券法과 證券去來를 管理해 오던 聯邦去來委員會(Federal Trade Commission, FTC)로 부터의 모든 業務를 引繼받아 證券去來를 公正하고 원활하게 수행하여 投資者를 保護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대적인 權限이 證券去來委員會에 주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SEC는 1933年的 證券法에 따라 제출되는 申告書의 樣式, 規準, 節次 및 規則을 提供할 權限을 賦與받는 동시에 1934年的 證券去來法에 따라 제출되는 年次報告書, 四半期報告書 등에도 擴張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 같은 權限은 證券法에 따라 SEC에 제출되는 報告書뿐만 아니라 SEC에 登錄하고 있는 企業이 委任懇請을 위해서 株主에 配布하는 委任狀說明書(proxy statement)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되었다.

SEC의 規制를 받는 機關은 直接적으로는 SEC에 登錄한 企業이 되나 대부분의 有力한 企業은 SEC에 登錄되어 있어 SEC의 規制를 받게 된다. 따라서 企業의 財務諸表에 대한 監查를 실시하고 있는 會計士事務所도 당연히 SEC의 規制와 監督을 받게 된다. 또한 財務諸表를 작성할 때 준거하여야 할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GAAP)을 제정하는 機構에 SEC가 미치는 影響을 考慮에 둔다면 SEC에 登錄하고 있지 않는 企業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影響力を 行사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登錄企業이 제출되는 財務諸表를 작성할 때 준수해야만 할 것으로서 現在 SEC가 規定하고 있는 것은 樣式 및 表示에 관한 것이며 會計處理 및 公開에 관한 會計原則은 SEC가 직접 마련하지 않고 民間團體(private sector)인 美國公認會計士會(AICPA)의 會計節次委員會(Committee on Accounting Procedure) 및 會計原則審議會(Accounting Principle Board)가 1936年부터 1973년까지 각각 공표한 會計研究公報(Accounting Research Bulletin, ARB) 및 會計原則審議會意見書(Opinion of Accounting Principle Board, APB Opinion)와 위의 義務를 인계 받은 財務會計基準審議會(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FASB)가 1973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표하고 있는 財務會計基準審議會報告書(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SFASB)에 준거할 것을 인정해 왔다. 그렇다고 해서 SEC가 會計原則을 제정할 權限을 포기하였다던가 또는 이를 制定할 意思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SEC 内部에서는 會計原則을 직접 제정하여야 한다는 意見이 강하게 일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위에서 설명한 民間團體에서 마련한 會計原則에 동조하지 않고 特定의 會計處理에 대해서는 SEC 獨自의 기준을 설정한 경우도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美國公認會計士會의 會計節次委員會와 이의 業務를 인계받은 會計原則審議會는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GAAP)으로서 각각 51가지의 會計研究公報ARB)와 31가지의 意見書를 公表하였으나 이들의 會計原則 제정 활동이 비능률적인데 대해서 SEC는 批判的인 입장을 취하였고 또한 이들이 마련한 會計原則을 준수할 입장에 있는 產業界로부터의 批判도 끊임없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AICPA는 產業界的 代表를 포함한 FASB를 構成하여 새로운 方法으로 會計原則을 제정할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 FASB는 그의 意見書의 草案(exposure draft)을 공개하여 널리 일반의 意見을 수집하고 이 意見이 채택된 GAAP가 되도록 最善의 努力を 경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SEC는 會計連續通牒(Accounting Series Releases; ASR) 150號에서 FASB가 公表하는 報告書를 지지한다고 하는 취지의 見解를 표명하는 한편 그의 活動을 주의깊게 監督하는 態度를 취하고 있다.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을 民間團體에 의하여 마련하려는 努力은 AICPA의 會計研究公報 및 意見書에 이어 FASB는 SEC에 대한 세번째의 挑戰이 된다. 따라서 FASB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SEC는 獨자적인 會計原則을 설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면 안된다. 法律에 의해서 강력한 權限을 賦與받은 政府機關인 SEC의 會計에 대한 강력한 影響力에 대응해서 어디까지나 自主路線을 지키려고 하는 民間團體의 努力を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SEC의 影響은 美國內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外國企業이 美國內에서 有價證券을 發行

한다던가 美國의 證券去來所에 上場하는 경우에는 SEC에 登錄을 하고 1933年的 證券法과 1934年的 證券去來法 등에 의하여 정해진 報告書를 SEC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SEC는 美國의 強力한 經濟力과 資本主義經濟를 이끌어오고 있는 證券市場의 背後에서 財務情報에 대한 公開問題를 규제함으로서 自由世界의 會計實務 및 理論에 지배적인 影響力도 행사하고 있다.

SEC에 제출하는 報告書에 포함된 財務諸表는 公認會計士의 監查를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 SEC는 監查人인 公認會計士의 獨立性을 강력하게 要求하고 있다 (Regulation S-X Rule 2-01). 이에 따라 美國公認會計士會는 스스로 倫理規程(Code of Professional Ethic)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는 데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會計士監查의 根幹을 이루는 會計士의 獨立性에 대한 疑問이 AICPA 内外에서 제기되어 1976년 12月 7日付의 美國上院의 메트카프(Metcalf) 小委員會의 報告에서 이 問題가 날카롭게 지적된 바 있다. 이 報告에서 美國의 會計制度에 관한 많은 問題點이 지적되고 그의 解決策에 대해서 勸告한 바 있는데 이때 最大的 問題點으로서 公認會計士의 獨立性에 대한 信賴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의 하나로서 政府機關이 監查人の 業務를 定期的으로 調査함으로서 그의 業務를 직접 管理할 것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서 AICPA는 政府가 監查業務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大幅的인 機構改革을 실시하고 自主的인 管理方法을 강구함으로써 이를 배제하려고 努力하고 있다.

5. 財務會計基準審議會의 活動과 展望

(1) 會計原則審議會에서 財務會計基準審議會로

美國公認會計士會(AICPA)의 會計原則審議會(APB)는 그의 活動을 시작한지 얼마안되어各界로부터 그의 非能率的인 活動에 대한 非難을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0年代 후반에 와서는 會計事務所의 급격한 발전, 새로운 問題의 繢出, 複雜하고 革新的인 會計實務의 發展, 그리고 合併運動 등이 나타나 이로부터 會計에 대한 많은 批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APB와 SEC간에는 종종 見解의 差異가 나타나 APB는 비난의 對象이 되었다. 당시에 批判의 對象이 되어 問題點으로 나타났던 몇 가지 점을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는 SEC와 APB와의 관계이다. 원래 美國에 있어서의 會計原則의 제정업무는 美議會로부터 SEC가 賦與받았으나 SEC는 이에 관한 權限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의 제정을 AICPA에 委任하여 APB의 意見을 대부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여 왔었다. 말하자면 SEC와 APB와의 관계에서 볼 때 SEC는 最高經營者層으로서 그

리고 APB는 下位經營者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兩者間은 協力關係에 있었다. 그러나 APB意見書 第 2 號 「投資稅額控除」(Investment Tax Credit)를 둘러싸고 AICPA의 APB는 SEC의 支持를 받지 못하는가 하면 意見書 第 6 號에서 제외되었던 「割賦販賣의 移延稅」의 처리에 관해서, APB의 要請에도 불구하고, SEC는 ASR 第102號를 발표하는 對立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SEC와 APB간에 대립이 나타나게 되자 APB에서 會計原則을 제정하는 데 대한 反省과 疑問이 제기되게 되었다.

둘째는 問題의 중대성과 강력한 反對에 부딪쳐 APB는 그 이상 활동하기가 困難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1960년대 후반에는 稅配分(tax allocation), 콩그로머레이트 企業의 출현에 따르는 企業結合(business combination), 持分풀링의 문제 등 많은 중요한 會計問題가 解決되지 못한 채로 남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會計原則을 形成하는 責任을 맡고 있는 APB委員은 非專任인데다가 自立的 委員會로서, 스텔補助의 결여, 不充分한 調査研究施設 등으로 말미암아 會計原則의 形成活動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따라서 APB보다 훌륭한 會計原則을 형성하는 강력한 組織이 要請되었던 것이다.

세째는 APB에서 制定한 會計原則의 強制力의 문제이다. APB는 AICPA의 內部機關이고 AICPA는 會計士의 私的 會員組織에 불과하다. 따라서 APB에서 마련된 會計原則을 被監查會社에 대해서 強制할 權限을 갖고 있지 못하다. 여기서 AICPA로부터 組織上 獨立된 機關에 의하여 客觀的으로 마련된 會計原則을 마련할 것이 要請되었다. 이 같은 의미에서 APB의 活動은 그 限界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³⁷⁾

이 같은 여전하에서 APB가 非難의 對象이 된 것은 會計實務에서 나타나는 非一貫性(inconsistency)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實務에 있어서 差異가 나타나는 領域을 좁히지 못하고, 새로운 領域의 財務報告問題를 發展시키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이 같은 問題에 대한 공격은 第 1 次의으로 職業會計人으로부터 나왔고 그 밖에도 SEC와 政府機關으로부터도 壓力を 받았다. 만일에 APB가 會計原則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한다면 SEC가 그 본래의 任務인 會計原則을 獨自의으로 마련할 것임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 된다.

APB에 대한 이와 같은 基本問題에 관한 批判과 아울러 1960年代의 財務會計에서 나타난 報告의 濫用으로 말미암아 會計原則을 수립하기 위한 組織構造를 研究하고 原則을 設定하는데 있어서 指針이 되는 財務會計의 基本目的에 대하여 研究할 여러 提案들이 나왔다.

(37) *Establishing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Report of the Study on Establishment of Accounting Principles* (New York: AICPA, 1972), p. 3.

1971년 1월에 美國公認會計士會(AICPA)의 理事會는 2日間의 會期에서 21個의 會計事務所(accounting firm)에서 선발된 35名의 會計士로 구성된 會議를 소집하였다. 이 會議의 目적은 AICPA가 여하히 會計基準設定의 役割을 再評價하고 여하히 그의 役割이 財務諸表에 의존하고 있는 여러 利害關係者의 요구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수행하느냐 하는 것을 論議하는 것이었다. 이 會議의 결론은 두개의 調查委員會를 설치하자는 것으로 끝이 났다. 第1의 調查委員會는 APB의 活動을 再檢討하기 위한 委員會로서 이 委員長은 휘트(Francis M. Wheat)였기 때문에 Wheat Study Committee라고도 한다.

第2의 調查委員會는 財務諸表의 目的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서 委員長이 트루블리드(Robert M. Trueblood)였던 관계로 이를 Trueblood Study Committee라고도 한다.

Wheat Study Committee는 1971년 5월부터 작업을 개시하여 다음해 3월에 그에 대한 연구결과로서 『會計原則設定에 관한 研究報告書』(*Report of the Study on Establishment of Accounting Principles*)를 발표하였다. 이 委員會의 報告書에서는 첫째로 財務會計財團(Financial Accounting Foundation, FAF)을 設置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 財團은 현존하는 職業團體와는 별도로 政府機關이 아닌 民間機關(private sector)으로서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둘째로는 FAF에서 임명한 7名의 常勤·有給의 委員으로 구성된 財務會計基準審議會(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FASB)를 설치하는 한편 세번째로서 財務會計基準諮詢委員會(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Council; FASAC)를 설치하는 제안이었다.⁽³⁸⁾ 그리고 이 諸節次가 완료되면 APB는 해산한다는 것이었다.

1972年 3月에 公開된 이 調查報告書는 同年 5月에 AICPA의 理事會의 承認을 얻고 同年 6月에는 FAF가 組織되었으며 FASB와 FASAC가 設立되었다. 이와 아울러 美國會計學會(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財務分析家聯合會(Financial Analysts Federation), 財務擔當員協會(Financial Executives Institute), 美國會計士協會(National Association of Accountants)는 調查委員會報告의 권고에 따라 援助할 것을 賛約하였다. 그리고 위 각각의 團體는 FAF의 理事會에 그들의 代表를 파견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1972年 11月부터 1973年 2月에 걸쳐 FASB와 FASAC의 メンバー가 指名되었다. 1973年 1月에는 코네티컷(Connecticut) 州의 스템포드(Stamford)에 FASB의 事務所가 개설되었고 同年 3月에 FASB와 FASAC의 첫번째 會合이 열렸다. 이와같이 하여 FASB가 成立하고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은 활발한 活動을 개시하게 되었다.

(2) 會計基準의 設定을 위한 組織

(38) *Ibid.*, pp. 69-81.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과정을 거쳐 設立된 FAF, FASB 및 FASAC의 相互關聯된 組織과 任務가 어떤 것인가를 1973年 3月 29日에 FAF의 規則(by-laws) 第 2條의 A, 섹션 12에 따라 FAF의 理事會에서 채택된 節次規則(Rules of Procedure)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FAF의 任務를 보면 ① FASB의 メンバー를 指名할 것, ② FASAC의 メンバー를 指名할 것, ③ 組織의 資金을 마련할 것, ④ FAF의 豊算編成과 統制, ⑤ FASB의 議長에 의해서 작성되어 제출된 時點에서 FASB 및 FASAC의 年次豫算을 承認하는 것, ⑥ FAF의 規則 및 財務會計 및 報告基準을 설정하는 基礎構造를 檢討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FAF는 9名으로 構成된 理事會에 의해서 統轄된다. 9名의 理事 중 8名은 AICPA의 理事會에서 選出된다. 물론 이때는 AICPA와 앞에서 설명한 4團體에서 推薦한 사람 중에서 選出한다. 이 8名의 內譯을 보면 4名이 會計士業務에 종사하고 있는 會計士이고 다른 4名은 반드시 會計士일 필요는 없게 되어 있다. 이 4名 중 2名은 財務擔當任員으로서 有經驗者이고 1名은 財務分析家, 다른 1名은 會計學教授이다. 그리고 9번째의 メンバー는 AICPA의 會長으로서 이는 職務上의 理事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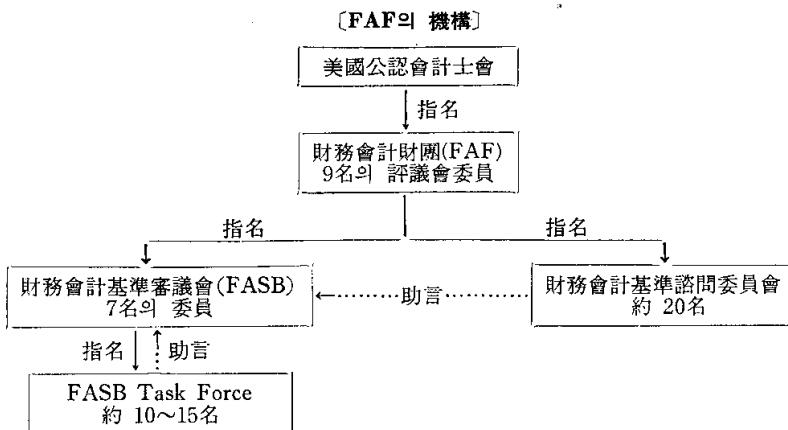
다음으로 FASB는 7名의 メンバー로서 構成된다. 이들 メンバー는 종래 AICPA의 APB委員과는 달리 有給의 常勤멤버로 되어 있다. FASB의 주요한 任務는 FAF로부터 移讓된 權限에 입각해서 財務會計 및 報告의 基準에 관한 意見書, 이에 관한 解說書, AICPA의 會計節次委員會의 會計研究公報(Accounting Research Bulletins, ARB) 및 AICPA의 會計原則審議會意見書(Opinions of Accounting Principles Board, APBO)의 解說書를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이들을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財務會計 및 報告基準의 設定 및 改良과 관련하여 적시에(timely) 완전한 研究를 可能하게 하고 利害關係者の 參加를 可能하게 하며 協議를 可能하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FASB는 이와 같은 중요한 任務를 갖고 있기 때문에 會長에 큰 權限을 賦與하고 있다. 會長은 FASB會議에서 議長의 任務를 수행함은 물론이고 그 밖에도 職員에 대한 資格의 設定, FASB 스텔·멤버(管理 및 調査 스텔)의 雇用, 確保, 契約 등의 權限을 갖는다. 또한 필요하다고 하면 FASB 또는 FASAC의 メンバー와 協議하여 專門委員會(task force)를 설치할 수가 있다. FASB에서의 審議事項의 準備와 그의 優先權에 대한 결정은 會長의 責任 및 權限에 속하는 사항이다. 專門委員會의 メンバー는 FASB의 議長이 FASB의 メンバー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FASAC의 メンバー와 協議해서 결정한다. 專門委員會는 FASB會長의 管理下에 두며 그의 任務는 ① 問題의 明確化와 그의 財務會計 및 報告問題의 精練化 ② 追加해서 연구할 사항이 있으면 그에 대한 연구의 性格 및 範圍를 결정하고 누구에 의해서

그것을 수행할 것인가를 劍告하며 ③ 討議資料(Discussion Memorandum)를 作成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끝으로 FASAC는 12名 以上의 メンバ로서 構成된다. 이 メンバー는 각종의 專門的 및 職業的 背景을 갖고 있는 것이 기대된다. FASAC의 メンバー는 FAF의 理事會에서 임명된다. FASAC의 第1의 任務는 FASB와 利害關係者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媒體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第2의 任務는 FASB와의 協議 및 助言이다. 예를 들면 FASB의 審議事項 및 그의 優先順位, 특정프로젝트에 대하여 活動하는 專門委員會의 選擇과 組織, 그밖에 필요한 事項 등에 대하여 FASB의 會長 또는 FASB의 メンバー와 協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意見書, 解說書 등에 관한 助言 및 評論도 FASAC의 임무의 하나가 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組織間의 상호 관계를 圖示하면 아래와 같다.



(3) FASB 會計基準의 設定過程

1973年 7月부터 활동을 개시한 FASB는 다음과 같은 節次에 따라 會計基準을 마련한다. 즉 FASB의 最初의 業務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첫째는 모든 利害關係者集團으로부터 제시된 基準에 관한 FASB의 解釋를 밝히는 것이고 둘째는 FASB가 가지고 있는 資源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解決하는 데 利用될 수 있도록 管理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에 따라서 FASB는 財務報告問題들을 評價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7段階過程을 마련하였다.

第1段階：諮詢委員會로부터의 諮問, AICPA 常任委員會 및 公認會計士法人과의 書信交換의 결과 協議案件이 될 수 있는 問題를 選定한다.

第2段階：FASB에서 公式的으로 協議할 事項을 決定한다.

第3段階：FASB에 의하여 Task Force가 指名된다.

第4段階：討議資料(discussion memorandum)가 發行되고 論評을 하도록 要請한다. 討議資料는 일 반적으로 Task Force가 指定된 후 6個月 이내에 發行된다.

第5段階：公聽會를 개최한다. 이것은 討議資料가 發行配布된지 30日 이후 3個月 이내에 갖게 된다.

第6段階：FASB는 公聽會가 있은지 10個月 以內에 提案된 公開草案(exposure draft)을 작성한다.

第7段階：會計基準을 공표한다. 이것은 公開草案이 作成된지 30日 以後 90日 이내에 公表하게 된다.

여기에서 論議되는 案件은 審議會의 討議結果 새로운 會計基準으로 發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위의 어떤 段階에서도 終結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상의 諸段階를 거쳐 發表된 財務會計基準報告書(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로서 1982년 末까지 다음과 같은 71가지가 나와 있다.

番號	發表年	FASB 報告書의 名稱
No. 1	1973	Disclosure of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Information
No. 2	1974	Accounting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No. 3	1974	Reporting Accounting Changes in Interim Financial Statements: An Amendment of APB Opinion No. 28
No. 4	1975	Reporting Gains and Losses from Extinguishment of Debt: An Amendment of APB Opinion No. 30
No. 5	1975	Accounting for Contingencies
No. 6	1975	Classification of Short-term Obligations Expected to be Refinanced: An Amendment of ARB No. 43, Chapter 3A
No. 7	1975	Accounting and Reporting by Development Stage Enterprises
No. 8	1975	Accounting for the Translation of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 and Foreign Currency Financial Statements
No. 9	1975	Accounting for Income Tax—Oil and Gas Producing Companies: An Amendment of APB Opinions No. 11 and 23
No. 10	1975	Extension of Grandfather Provisions for Business Combinations: An Amendment of APB Opinion No. 16
No. 11	1975	Accounting for Contingencies—Transition Method: An Amendment of FASB Statement No. 5
No. 12	1975	Accounting for Certain Marketable Securities
No. 13	1976	Accounting for Leases
No. 14	1976	Financial Reporting for Segments of a Business Enterprise

番號	發表年	FASB 報告書의 名稱
No. 15	1977	Accounting by Debtors and Creditors for Troubled Debt Restructurings
No. 16	1977	Prior Period Adjustments
No. 17	1977	Accounting for Leases-Initial Direct Costs: An Amendment of FASB Statement No. 13
No. 18	1977	Financial Reporting for Segments of a Business Enterprise-Interim Financial Statements: An Amendment of FASB Statement No. 14
No. 19	1977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by Oil and Gas Producing Companies
No. 20	1977	Accounting for Forward Exchange Contracts: An Amendment of FASB Statement No. 8
No. 21	1978	Suspension of the Reporting of Earnings per Share and Segment Information by Nonpublic Enterprises: An Amendment of APB Opinion No. 15 and FASB Statement No. 14
No. 22	1978	Changes in the Provisions of Lease Agreements Resulting from Refundings of Tax-Exempt Debt: An Amendment of FASB Statement No. 13
No. 23	1978	Inception of the Lease: An Amendment of FASB Statement No. 13
No. 24	1978	Reporting Segment Information in Financial Statements that are Presented in Another Enterprise's Financial Report: An Amendment of FASB Statement No. 14
No. 25	1979	Suspension of Certain Accounting Requirements for Oil and Gas Producing Companies: An Amendment of FASB Statement No. 19
No. 26	1979	Profit Recognition on Sales-Type Leases of Real Estate: An Amendment of FASB Statement No. 13
No. 27	1979	Classification of Renewals or Extensions of Existing Sales-Type or Direct Financing Leases: An Amendment of FASB Statement No. 13
No. 28	1979	Accounting for Sales with Leasebacks: An Amendment of FASB Statement No. 13
No. 29	1979	Determining Contingent Rentals: An Amendment of FASB Statement No. 13
No. 30	1979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Major Customers: An Amendment of FASB Statement No. 14
No. 31	1979	Accounting for Tax Benefit Related to U.K. Tax Legislation Concerning Stock Relief
No. 32	1979	Specialized Accounting and Reporting Principles and Practices in AICPA Statements of Position and Guides on Accounting and Auditing Matters: An Amendment of APB Opinion No. 20
No. 33	1979	Financial Reporting and Changing Prices
No. 34	1979	Capitalization of Interest Cost
No. 35	1980	Accounting and Reporting by Defined Benefit Pension Plans
No. 36	1980	Disclosure of Pension Information: An Amendment of APB Opinion No. 8
No. 37	1980	Balance Sheet Classification of Deferred income Taxes: An Amendment of APB Opinion No. 11
No. 38	1980	Accounting for Preacquisition Contingencies of Purchased Enterprises: An Amendment of APB Opinion No. 16
No. 39	1980	Financial Reporting and Changing Prices Specialized Assets—Mining and Oils

番號	發表年	FASB 報告書の名稱
No. 40	1980	and Gas: A Supplement to FASB Statement No. 33 Financial Reporting and Changing Prices: Specialized Assets—Timberlands and Growing Timber: A Supplement to FASB Statement No. 33
No. 41	1980	Financial Reporting and Changing Prices: Specialized Assets—Income-Producing Real Estate: A Supplement to FASB Statement No. 33
No. 42	1980	Determining Materiality for Capitalization of Interest Cost: An Amendment of FASB Statement No. 34
No. 43	1980	Accounting for Compensated Absences
No. 44	1980	Accounting for Intangible Assets of Motor Carriers: An Amendment of Chapter 5 of ARB No. 43 and An Interpretation of APB Opinions 7 and 30
No. 45	1981	Accounting for Franchise Fee Revenue
No. 46	1981	Financial Reporting and Changing Prices: Motion Picture Films: A Supplement to FASB Statement No. 33
No. 47	1981	Disclosure of Long-Term Obligations
No. 48	1981	Revenue Recognition when Right of Return Exists
No. 49	1981	Accounting for Product Financing Arrangements
No. 50	1981	Financial Reporting in the Record and Music Industry
No. 51	1981	Financial Reporting by Cable Television Companies
No. 52	1981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No. 53	1981	Financial Reporting by Producers and Distributors of Motion Picture Films
No. 54	1982	Financial Reporting and Changing Prices: Investment Companies: An Amendment of FASB Statement No. 33
No. 55	1982	Determining whether a Convertible Security Is a Common Stock Equivalent: An Amendment of APB Opinion No. 15
No. 56	1982	Designation of AICPA Guide and Statement of Position (SOP) 81-1 on Contractor Accounting and SOP 81-2 concerning Hospital-Related Organizations as Preferable for Purposes of Applying APB Opinion 20: An Amendment of FASB Statement No. 32
No. 57	1982	Related Party Disclosures
No. 58	1982	Capitalization of Interest Cost in Financial Statements That Include Investments Accounted for by the Equity Method: An Amendment of FASB Statement No. 34
No. 59	1982	Deferral of the Effective Date of Certain Accounting Requirements for Pension Plans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al Units: An Amendment of Statement No. 35
No. 60	1982	Accounting and Reporting by Insurance Enterprises
No. 61	1982	Accounting for Title Plant
No. 62	1982	Capitalization of Interest Cost in Situations Involving Certain Tax-Exempt Borrowings and certain Gifts and Grants
No. 63	1982	Financial Reporting by Broadcasters
No. 64	1982	Extinguishments of Debt to Satisfy Sinking-Fund Requirements: An Amendment of FASB Statement No. 4
No. 65	1982	Accounting for Certain Mortgage Banking Activities

番號	發表年	FASB 報告書의 名稱
No. 66	1982	Accounting for Sales of Real Estate
No. 67	1982	Accounting for Costs and Initial Rental Operations of Real Estate Projects
No. 68	1982	Research and Development Arrangements
No. 69	1982	Disclosure about Oil and Gas Producing Activities: An Amendment of FASB Statements 19, 25, 33 and 39
No. 70	1982	Financial Reporting and Changing Prices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No. 71	1982	Accounting for the Effects of Certain Types of Regulation

위에서 열거한 財務會計基準의에도 FASB는 「FASB解說」(FASB Interpretation)과 「財務會計概念에 관한 報告書」(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를 발표하고 있다.

여기서 「FASB解說」이란 것은 이미 발표된 APB意見書(APB Opinion)나 FASB報告書(FASB Statement)를 解說한 것이다. 이것은 1974년 6월에 第1號를 발행한 것을 효시로 하여 1981년 5月末까지 35號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財務會計概念에 관한 報告書」는 財務會計 및 報告基準이 근거하고 있는 理論的 基礎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財務會計의 基礎概念에 관한 FASB의 연구결과를 공식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것은 FASB가 財務會計 및 報告基準을 전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목적이나 概念을 확립할 것을 목표로 하여 1978년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4號를 발표한 바 있다.

- No. 1 1978년 企業의 財務報告의 目的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by Business Enterprises)
- No. 2 1980년 會計情報의 質的 性格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Information)
- No. 3 1980년 企業의 財務諸表의 要素 (Elements of Financial Statements of Business Enterprises)
- No. 4 1980년 非營利組織에 의한 財務報告의 目的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by Nonbusiness Organizations)

(4) FASB와 SEC의 關係

SEC는 會計原則의 制定機關이 종래의 APB에서 FASB로 대체된 데 대해서 會計連續通牒(Accounting Series Releases; ASR) 第150號(1973년 12월 20일)를 발행하여 ARB나 APB意見書와 더불어 FASB의 報告書의 會計原則으로서의 性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公表하였다. “FASB報告書 및 解釋에 의해서 表示되는 會計原則·會計基準 및 實務는 SEC에 의해서 實質的으로 權威있는 支持를 받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또한 이에 反하는 것은 이와 같은 支持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FASB의 公式見解는 “實質的으로 權

威 있는 支持”(substantial authoritative support)를 받는 會計原則이란 점이 명백히 되었다.

그러면 현재 FASB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會計原則은 종래와는 달리 獨立性과 客觀性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會計原則을 제정하고, 또 그의 權威를 높이려는 목적이 결과적으로 충분히 실현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評價는 앞으로 불가피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FASB의 報告書를 중심으로 하여 지금까지 나타난 成果를 보면 그간의 報告書가 基礎的이고 理論的이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分析的이고 實踐的인 면이 강하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AICPA의 ARB나 APB의 Opinion과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意見도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基本的으로는 FASB도 AICPA의 延長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³⁹⁾

(5) FASB 體制에 대한 批判—메트카프報告書

以上에서 밝힌 바와 같이 FASB는 AICPA의 APB에 代身하여 새로운 會計原則의 制定機關으로서 활발한 業務遂行을 약속받고 本 業務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975년 末頃에 직접적으로는 Big Eight에 대해서, 間接的으로는 FASB에 대해서 美議會의 公的 입장으로부터 강한 批判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美國上院 政府活動委員會 會計報告, 會計 및 經營委員會」(U.S. Senate, Subcommittee on Reports, Accounting and Management of the Committee on Government Operations)가 約 1年間에 걸쳐 調査한 結果를 1976년 12月 7日付로 上院政府活動委員會에 제출한 후 1977년 3月 31日부로 출판한 『會計의 支配機構』(The Accounting Establishment)라고 하는 報告書에서 具體化되었다. 이 報告書는 上記 小委員會의 委員長이었던 메트카프(Lee Metcalf)의 이름을 따서 보통 「메트카프報告書」(Metcalf Report)라고 부른다.

本 報告書의 취지는 大衆이 所有하고 있는 會社가 大衆에 대한 財務 및 기타 情報의 報告문제와 관련하여 會計實務를 確立하기 위한 聯邦政府의 役割에 관한 研究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이같은 研究를 하게 된 動機는 “최근 명백하게 된 일련의 企業倒產 및 企業의 자금난 외에 大企業에 의한 不正이 미리 報告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暴露됨으로써 促進되었다”고 하고 있다. 同小委員會는 이와 같은 문제는 오늘날 會計實務가 企業活動의 實體를 정확히 反映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큰 原因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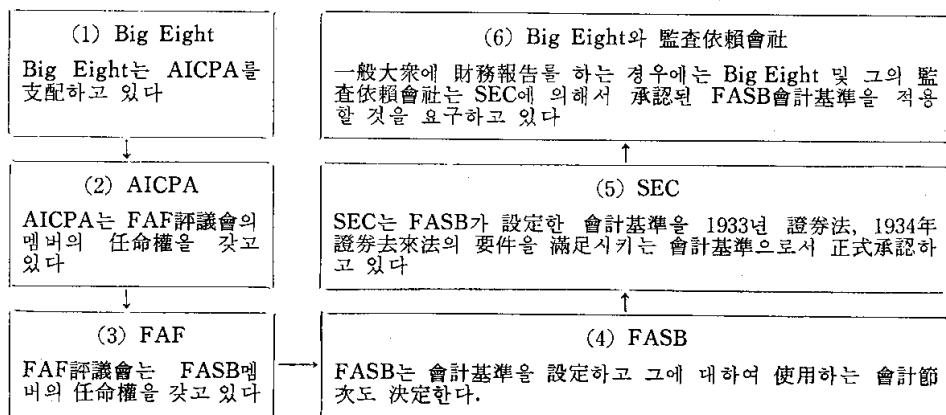
이 報告書는 會計의 “가장 悲觀的인 觀測者도豫測하지 못했던 가장 신랄한 報告書”로 나타났다. 이 報告書는 未公開되어 있던 각종 자료를 각 관계단체로 부터 반강제적으로 簡集하여 장장 1,760페이지에 달하는 調査分析과 勸告를 하고 있다.

(39) R. Chatov, *Corporate Financial Reporting*, 1975, p. 247.

종래 이와 같은 批判的 論文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때마다 즉시 獨斷의이라던가 偏見이라던가 또는 證據가 불충분하다는 등 심한 攻擊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다.⁽⁴⁰⁾ 그러나 이報告書에서는 이같은 攻擊을 하고 背景에 관해서도 암시하고 있다. 뉴욕州立大學의 샤토브(R. Chatov)와 같은 會計批判과 그에 따르는 會計構造의 變革提唱者도 이 報告書에 대한 公聽會에서 證人으로서 改革案을 제창하였고 뉴욕市立大學의 브릴로프(A.J. Briloff)는 會計士의 獨立性의 批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의 주장의 一部가 메트카프報告書 중의 ディスク로서 16페이지에 걸쳐 게재되어 있다.

결국 「메트카프 報告書」의 要旨는 Big Eight 會計事務所(Arthur Anderson & Co., Arthur Yong & Co., Coopers & Lybrand, Ernst & Ernst, Haskins and Sells, Peat, Marwick, Michell & Co., Price Waterhouse & Co., Touche Ross & Co. 등) 및 AICPA는 美國 會計界와 會計基準을 완전히 장악한 결과 FASB는 그 機構에 완전히 支配되어 당초에 期待했던 機能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Big Eight는 AICPA를 支配하고, AICPA는 FAF, FAF는 다시 FASB를 지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결국에는 民間에 의한 獨立不偏의 會計基準 設定機關으로서의 機能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Big Eight 會計事務所 및 AICPA에 의한 會計基準의 支配圖



自由主義經濟下에서 기업이 격심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정확한 情報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前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은 만족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였다. 그理由는 첫째 SEC가 명백하게 利害關係가 있는 民間에 會計의 諸問題에 대해서 公的 權限과 책임을 委託하였다라는 점을 들 수 있고 둘째로는 株式會社의 監查를 거의 한

(40) 예를 들면 Stephen A. Zeff, "Book Review of Report Chatov's Corporate Financial Reporting," *Abacus*, Dec. 1976, pp. 168-171을 참조.

손에 장악하고 있는 Big Eight 會計事務所의 獨立監查證明이 놀라울 정도로 獨立性을 결여하고 있고 또 大衆의 利益保護에 헌신하고 있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本 報告書는 分析하고 있다. 따라서 大衆의 信賴를 回復하기 위하여 大略 다음과 같은 요지의 16個項目에 걸친 劸告를 하고 있다.

- ① 議會에 의한 會計實務를 監督強化할 것
- ② 議會에 의한 綜合的인 會計目的을 樹立할 것
- ③ 손해를 입은 개인이 監查人에 대해서 損害賠償請求訴訟을 할 수 있도록 聯邦證券法의 改正을 議會에 요청할 것
- ④ 監查人の 選任에 관한 會計事務所 상호간의 自由競爭을 촉진시킬 것
- ⑤ 聯邦政府에 의해서 財務會計基準을 설정할 것
- ⑥ 聯邦政府에 의해서 監查基準을 설정할 것
- ⑦ 聯邦政府에 의해서 監查人業務를 定期的으로 調査할 것
- ⑧ 聯邦政府에 의해서 監查人의 獨立性에 대한 一般大衆의 信賴를 回復하기 위한 行爲의 基準을 설정할 것
- ⑨ 聯邦政府에 의한 15개 大會計事務所의 業務活動 및 財務報告書의 公開를 요구할 것
- ⑩ 聯邦政府에 의해서 監查人の 責任을 명확하게 할 것
- ⑪ 聯邦政府에 의해서 財務會計基準, 原價會計基準, 監查基準 및 其他 會計實務指針을 설정하여 一般에게 공개할 것
- ⑫ 聯邦政府는 監查 및 會計業務가 과도하게 集中되는 것은 排除하도록 할 것
- ⑬ 聯邦政府는 會計事務所가 獨立 監查人으로서, 監查 및 會計서비스에 局限해서 業務活動을 해야 하고 매니지먼트 서비스 業務를 배제하도록 할 것
- ⑭ 聯邦證券諸法에 따라 SEC는 모든 獨立 監查人에 대한 公平한 懲罰規程을 적용할 것
- ⑮ 原價計算基準審議會(Cost Accounting Standard Board, CASB)의 委員이 產業界 및 會計事務所 代表가 되는 것을 排除할 것
- ⑯ 聯邦政府職員이 AICPA 또는 聯邦政府의 會計政策 또는 節次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사한 團體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할 것

(6) FASB의 展望

그러면 FASB는 APB가 갖고 있던 많은 矛盾을 克服하고 일반이 다같이 共感하고 또 受容할 수 있는 會計原則을 마련하고 또한 一般的인 會計原則 體系를 樹立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하여 一部論者들은 FASB에 의해서 APB가 解決하지 못하였던 문제가 어느 경

도는 解決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새로운 難題들이 나타나 FASB 역시 困境에 빠지게 될 것을豫見하는 사람도 있다.⁽⁴¹⁾ 이와 같이 主張하는 理由는 會計實務家들이 會計原則을 制定하게 되면 理解關係 때문에 公正하고 올바른 原則을 마련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메트카프 報告書」에서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은 많은 모순점이 노정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法的으로 會計原則을 制定할 權限이 있는 SEC가 이것을 擔當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여하튼 FASB는 職業會計人들이 民間部門에서 會計原則 定立에 대한 主導權을 維持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機會를 提供받은 것인지도 모른다. 만일 FASB이 活動이 失敗로 끝나는 날이면 SEC가 會計原則制定의 權限을 행사하게 될 것이며 일단 그와 같이 될 경우에는 會計原則의 制定權限이 다시 民間部門으로 委讓되기란 어려울 것이다. FASB뿐만 아니라 職業會計人們의 將來 運命은 FASB가 어떻게 현재의 會計上의 問題點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데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V. 結　　言

美國은 會計原則 成文化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獨自의으로 發展시킨 최초의 國家가 된다. 그리고 그들의 究研成果는 오늘날 自由世界의 企業經濟活動의 報告問題를 改善해 나가는데 있어서 직접적으로나 間接的으로 지대한 影響力を 行사하고 있다.

1929年 大恐慌을 經驗하면서 종래 중시해왔던 會計機能 즉, 債權者 保護를 위한 會計와 受託責任에 국한되어 있던 會計로부터 탈피하여 投資者 내지는 일반대중에 대한 企業經濟活動의 報告問題에 관심이 集中되면서 會計는 새로운 價值있는 研究分野로서 學界·實務界의 관심의 對象이 되었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會計原則의 體系를樹立하여야 한다는 問題로 集中되었다.

會計原則에 관한 최초의 論議는 1980년대 초기로부터 시작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學界와 實務界의 관심의 촽점이 되고 있다.

初期段階에 있어서의 會計原則은 會計實務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會計擔當者들이 준수하여야 할 평이한 原則의 内容을 가지고 등장하였으나 會計의 理論的 究研가 진전됨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會計原則이 나타나게 되었다.

(41) M. Moonitz, "Obtaining Agreement on Standards in the Accounting Profession," *Studies in Accounting Research*, No. 8, AAA, 1974, p. 87.

처음에 會計原則 成文化의 法的權限은 美國議會에 의하여 證券去來委員會에 賦與되었으나 同委員會는 주로 會計情報의 公開問題에만 관심을 갖고 會計原則의 成文化는 會計機關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여 실제로는 美國公認會計士會의 會計節次委員會와 그 뒤에 있어서는 會計原則審議會(APB)에 의하여 마련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美國의 會計學界·實務界의 40年에 걸친 꾸준한 論爭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會計士와 會計報告書의 論者들이 同意하고 또 信賴할 만한 包括的이고 統一된 會計概念 및 報告書는 나타나지 않았다. 會計原則을 보다 效率的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會計原則制定機構인 財務會計基準審議會가 1973年부터 종래의 會計原則審議會를 대신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審議會의 活動여하에 따라 會計原則의 非정主體가 民間部門(private sector)에 그대로 남겨되느냐 아니면 政府機關(public sector)으로 환원되느냐 하는 것이 決定될지도 모른다.

여하튼 半世紀에 가까운 會計原則을 둘러싼 論爭을 치거는 동안 明確한 會計原則의 體系를 이룩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會計理論을 公式化 하는데 있어서 歸納的接近方法과 演繹的接近方法에 어느 정도의合一點에 接近하고 있는 것은 그간의 努力의 결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